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조사번호: 구제 23-2022-1호)

2022. 7. 21.

무 역 조 사 실

# < 목 차 >

I . 예비조사 개요 ···································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1
2. 조사대상물품4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8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16
5.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28
6. 비밀취급 여부 검토33
म होत्रोगो
Ⅱ. 덤핑사실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
2. 덤핑사실 조사경과
3. 조사대상물품의 물품통제코드(CCN) 변경에 대한 요청 ···············39
4.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40         5.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66
5. 임정사실 소사설과 중합00
Ⅲ. 국내산업의 피해67
1.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67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68
Ⅳ.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99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99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102
3. 인과관계 종합검토112
V.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
< 참고자료 >
<b>P</b>
참고 1. 산업피해조사 경과117
참고 2. 덤핑조사 경과118
참고 3. 국내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120
참고 4.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조사 과련 소과부처 의견 … 122

## < 붙임자료 >

붙임	1.	조사개시 공고	L문 ······	••••••	12	6
붙임	2.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개요12	9
붙임	3.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제출자료13	0
붙임	4.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후 추가 제출자료15	0

#### 안내 사항

-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함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금액은 10,000. 물량 등은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 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 I. 예비조사 개요

#### 1. 신청인,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 가. 신청취지

○ '22.1.7.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의 덤핑수입(신청인주장 덤핑률: 30.0%~47.6%)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함1)

#### 나. 신청인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 대리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김학훈,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동운

< 신청인 현황('21년 기준) >

1 2 2 2 3 (2 2 1 2 ) 1						
구분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설	립일	2012.7.1.				
대	표자	민남규				
	본사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61				
주 소	공장	제1공장 : 충남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061 제2공장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313-55(동종물품 생산)				
자본금	(백만원)	2,000				
매출액	총매출액	101,812				
(백만원)	동종물품	XXX				
주요생	]산제품	폴리아미드(BOPA) 필름, OPP 필름 등				
종업원수	전 체	XXX				
(명)	동종물품	XXX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sup>1)</sup> 신청인은 당초 조사신청서를 '21.12.1.일자로 제출하였으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2-2호)'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서 보완요청('21.12.27.)에 대하여 신청인이 '22.1.7.일자로 조사신청서 보완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동 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된 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 다. 조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신청인 제시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 및 그 관계사 - 효성화학주식회사	30.0%	대응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	40.4%	대응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	47.6%	미대응

- \* 자료 : 조사신청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ㅇ 조사대상공급자의 대리인
  -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변호사 장영철), (주)리인타(공인회계사 김동준)
  - 효성자싱 및 그 관계사: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변호사 장영철), (주) 리인타(공인회계사 김태익)
  - 에이제이피: 법무법인 영진(변호사 이광민), 에이치앤컨설팅(주) (공인 회계사 김창훈)
  - 코롱이나: 미대응

## 라. 조사대상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 '20. 7. 1.부터 '21. 6. 30.까지
- ㅇ 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 '18. 1. 1.부터 '21. 12. 31.까지

#### 2. 조사대상물품

가. 품명 : 폴리아미드<sup>2)</sup> 필름(Biaxially Oriented<sup>3)</sup> Polyamide Film, BOPA Film)

- 관세품목분류: HSK 3920.92.00004)

- 관세율: 기본세율 8.0%, WTO협정세율 6.5%, 한-중국 FTA협정세율5 0%~1.3%,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0%

#### 나. 조사범위

○ 정의 : 연신6)가공된, 두께 25μm7)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8), 다른 필름 등과 합지9)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다.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카프로락탐(Caprolactam)¹0)을 중합¹¹)시켜 제조된 폴리아미드를 연신 가공하여 필름화한 것으로, 고투명, 고광택, 무독성 등 필름의 일반 특성과 함께, 다른 필름에 비해 뛰어난 내열성 및 내한성¹²), 가스 차단성¹³), 인

- 5) 「한-중국 FTA」(발효 '15.12.20.)에 따라 '18년 1.3%, '19년 이후 0% 적용.
- 6) 길이를 늘리는 것.
- 7) 마이크로미터(µm)는 미터의 백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
- 8) 금속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서 필름에 덮어씌우는 공정.
- 9) 소재가 다른 여러 필름을 중첩시킴. 포장재의 생산을 위해서는 단일의 필름보다는 여러 소재의 필름을 중첩하여 사용함.
- 10) 카프로락탐은 합성섬유 및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주로 폴리아미드 6의 원재료로 사용됨. 카프로락탐은 분자 한쪽에 아민(amine, 질소 유기화합물), 다른 한쪽에 아시드(acide, 산) 반응기를 가지고 있어 단일의 물질만으로 중합될 수 있는 특징을 보임.
- 11) 중합(Polymerization)이란 어떤 화합물 분자가 2개 이상 결합하여 보다 분자량이 큰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뜻함.

<sup>2)</sup> 폴리아미드는 아미드기(-CONH-)의 연결에 의해 만들어진 중합체로 된 섬유로서 일반적으로 나일론으로 명칭하기도 함. 미국의 듀폰(DuPont)사에서 캐로더스(Carothers)가 10년간 연구하여 1937년에 발명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퍼얼론 L이라고 불리며, 필름 제조 외에도 섬유,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사용됨.

<sup>3)</sup> 두 개의 축으로 늘린 것이며, 폴리아미드 필름은 폴리아미드를 기계 진행방향(MD)과 횡방향 (TD)의 양방향으로 늘려서 제조됨. 기계방향(MD)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 따라 이동하는 방향을 의미하며, 횡방향(TD)이란 제품 이동방향의 횡방향을 의미함.

<sup>4)</sup>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장강도14) 등의 개별 물리적 특성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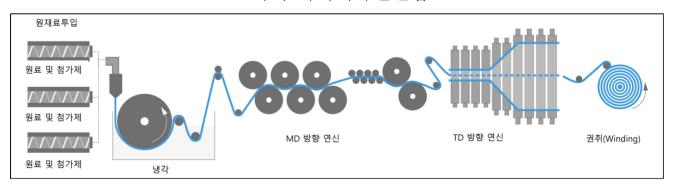
## 라. 용도

○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 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됨

#### 마. 제조공정

-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하여 얇은 판상형의 형태로 가공하며, 필름 제조공정은 중요 공정인 제막(또는 연신)의 방식에 따라 T-다 이15)법과 원형 다이법(또는 Tubular 법)이 있음
  - ① (T-다이법) T 모양의 다이에 용융된 폴리아미드를 압출하여 종방향<sup>16)</sup> (MD; Machinery Direction), 횡방향<sup>17)</sup>(TD: Transverse Direction)으로 당겨서 늘리는 방법으로 연신하여 필름화하는 공법임. 종방향 및 횡방향의 연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축차이축연신이며, 동시에 진행되면 동시이축연신이라 함.

#### <T-다이 축차이축연신법>



<sup>12)</sup> 우수한 열수치 안정성을 이용하여 레토르트 식품(단층플라스틱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한 용기포장에 미리 만들어놓은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후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식품) 및 냉동식품 등의 포장용으로 적용됨.

<sup>13)</sup> 폴리아미드 필름은 다른 소재에 비하여 높은 가스차단성을 보임.

<sup>14)</sup> 포장재 중 우수한 인장강도의 특성으로 중량물 등의 포장에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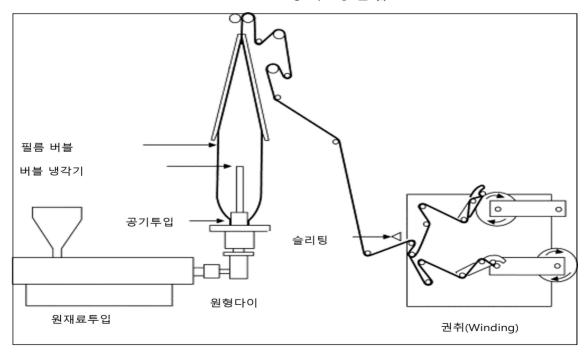
<sup>15)</sup> T-다이: 필름을 압출하여 판상형으로 만드는 기구, 다이의 한 종류로서, 압출된 수지의 변형이 뒤집힌 T자 형태로 된다고 하여 붙은 용어임.

<sup>16)</sup> 종방향(Machinery Direction, MD)은 압출방향과 나란하거나 "기계 가공 방향"을 말함.

<sup>17)</sup> 횡방향(Transverse Direction, TD)은 압출과 수직 방향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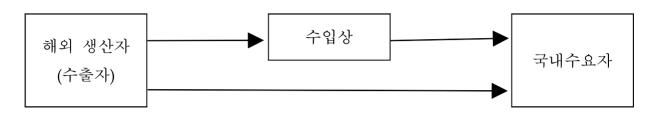
- (1) 원료 투입: 폴리아미드 칩과 첨가제를 투입하는 공정
- (2) 용융 및 압출 공정: 혼합된 원료를 용융하여 압출시켜 판상 형태로 만드는 공정
- (3) 냉각: 판상 형태로 구성된 원료를 냉각하여 결정화 공정
- (4) MD방향 연신: 압출된 제품을 여러 롤러의 회전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종방향(MD)으로 연신하는 공정
- (5) TD방향 연신: MD 방향으로 연신된 제품의 끝단을 잡아 횡방향 (TD)으로 당겨서 연신하는 공정
- (6) 권취: 연신이 완료된 제품을 대형 롤에 마는 공정
- (7) 슬리팅 및 포장: 고객의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절단하고 포장하는 공정
- ② (원형 다이법) 원형의 다이에 용융된 폴리아미드를 압출 후 공기압을 이용하여 연신하는 방법임. 원형 다이법(또는 Tubular 방식 생산법)에서는 원재료의 투입 및 권취 공정은 T-다이법과 유사하나, 제막공정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용융된 폴리아미드를 MD와 TD방향으로 동시에 팽창시켜 필름화하는 차이점이 있음.

#### < Tubular 방식 생산법>



## 바. 유통경로

○ 국내 수입상이 해외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국내 수요자가 직접 해외수출자(생산자)로부터 수입 하는 경우가 있음



#### 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

####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 관 련 법 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①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 가. 품명 및 정의 : 조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 나. 물리적 특성

- 1) 신청인측 주장
- 신청인측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물리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은 두께, 인장강도, 인장신도, 수축률, 흐림도등 각 물리적 특성 값이 KS 규격 내에 있어 유의할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18)
- 2)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 조사 답변서에서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 품은 물리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다른 일부 수 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이 물리적 강도, 컬(curl)¹9) 방지효과

<sup>18)</sup> 신청인의 국내생산자 답변서('22.4.25. 제출)

<sup>19)</sup> 컬(curl)이란 포장재로 가공하기 위하여 폴리아미드 필름을 적층할 경우에 폴리아미드 필름에 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컬이 발생하면 포장재 가공시 불량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서, '22.5.25. 제출)

#### 등 특성이 우수하다고 답변함20)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EN	r) 0)		조	사대상물	국내 생산품	허용기준 (KS) <sup>22)</sup>	
특성		단위		태국			인도 네시아
두께(Thickness)	μι	n					15±1.5
인장강도23)	MD	МРа					≥150
(Tensile Strength)	TD	MPa					≥150
인장신도24)	MD	%					≤200
(Elongation at Break)	TD	%					≤200
수축률 <sup>25)</sup>	MD	%					≤6.0
(Heat Shrinkage by Heated Air)	TD	%					≤6.0
흐림도 <sup>26)</sup> (Haze)	%	)					≤8.0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FITI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22.4.14. 발급))

#### 3) 조사실 검토

○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sup>20)</sup>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물리적 특성 차이 관련, 답변서를 제출한 수입자 3개사, 수입자 및 수요자 1개사, 수요자 1개사 등 5개사 중, 수입자 2개사와 수입·수요자 1개사 등 3개사는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답변하였고, 수입자 1개사와 수요자 1개사 등 2 개사는 차이가 없다고 답변함. 수입자 효성화학(주)은 "산소투과도, 내한성, 내핀홀성 등이 우수"한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자 (주)크라운화학은 차이 "없음", 수입자 (주)플러스팩은 조사대상물품이 "물리적 강도가 높다", 수입1사 및 수요1사는 조사대상물품은 "컬(curl)방지" 기능이 있다, 수요2사는 "차이없음"이라고 각각 답변함

<sup>21)</sup> 신청인 답변서('22.5.23. 제출)에 따르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을 위한 시료로는 중국은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社,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社, 인도네시아는 PT. KOLON INA社의 폴리아미드 필름을 각각 사용하였다고 함

<sup>22)</sup> 한국산업표준(KS)「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이축 연신 폴리아미드(나일론) 필름 KS M ISO 15987:2003」(산업표준심의회, '17.7.13. 제정)에 따른 허용기준임

<sup>23)</sup>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제품에 인장력을 가했을 때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최대 하중을 나타낸 값으로 MPa 단위 등으로 표시되며, 1MPa(메가파스칼)은 1,000,000Pa(파스칼)이고, 1Pa(파스칼)은 1㎡(제곱미터) 당 1N(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의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임. "파단"은 필름의 양 끝을 잡아 당길 때 필름이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현상을 말함

<sup>24)</sup> 인장신도(Elongation at Break)은 제품에 인장력을 가했을 때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늘어난 비율을 나타냄

<sup>25)</sup> 수축률(Heat Shrinkage by Heated Air)은 제품을 열풍(160℃)에 일정시간(15~30분) 노출하 였을 때 수축하는 비율을 나타냄

<sup>26)</sup> 흐림도(Haze)는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냄

물리적 특성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 신청인이 제출한 FIT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두께, 인장강도, 인장신도, 수축률, 흐림도 등의 물리적 특성 값이 모두 KS 허용기준 내에 있는 점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구성요소 및 용도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카프로락탐(Caprolactam)을 중합시켜 제조된 폴리아미드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그 구성요소 및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 라. 제조공정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하여 얇은 판상형의 형태로 가공하며, 필름 제조공정에는 중요 공정인 제막(또는 연신)의 방식에 따라 T-다이법과 원형 다이법(또는 Tubular법)이 있음

## 1) 신청인측 의견

- 신청인에 따르면, 최근 폴리아미드 필름은 T-다이법과 원형 다이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되며,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대부분 T-다이법으로 생산되어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27)
- 2) 수입자 및 수요자측 의견 : 특별한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sup>27)</sup> 신청인 답변서('22.4.25. 제출)

- 3) 조사실 검토
- 앞서 "I.2.마. 제조공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물품은 T-다이법 또는 원형 다이법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신청인은 국내생산품을 T-다이 법으로 생산28)하고 있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제조공정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마.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1)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 조사답변서에 따르면, 일부 수입자·수요자는 기본적인 용도면에서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나, 동시이축연신 방식29)으로 생산된 일부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은 컬 (Curl) 방지효과 등 품질이 축차이축연신 방식의 국내생산품 대비 우수 하여 최종 수요자들이 중국산 조사대상물품을 선호한다고 주장함30)
- 효성화학(주)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은 유사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조사대상물품은 두께 평활도<sup>31)</sup>가 좋으며, 컬(Curl) 방지 효과가 국내생산품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주장함<sup>32)</sup>
  - 아울러, 신청인이 축차이축연신방식이더라도 생산된 제품의 중앙 (Center) 부분과 원형 다이법 방식으로 생산된 국내생산품은 동시이

<sup>28)</sup> 조사신청서 p.13.(신청인은 T-다이법의 일종인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국내생산품을 생산함)

<sup>29)</sup> 폴리아미드 필름의 종방향(MD: Machinery Direction) 및 횡방향(TD: Transverse Direction)의 연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축차이축연신(sequential biaxial orientation) 방식이고, 폴리아미드 필름의 종방향 및 횡방향 연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동시이축연신(simultaneous biaxial orientation) 방식임

<sup>30)</sup>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품질 차이 관련, 조사답변서에서 수입자 효성화학(주)은 "기본적인 용도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최신 설비로 생산된 중국산 제품은 품질 안정성 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답변('22.4.25. 제출)하였고, 수입자 및 수요자 xxx(수입1사, 수요1 사)은 소비자 평가에 있어 "컬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중국산만 사용을 요구"하며, "국산보다 10%가격이 높아도 구입의사가 있으며, 국산의 품질을 100이라고 할 때 중국산은 200"으로 답변('22.4.13. 제출)하였으며, 수입자 (주)플러스팩은 품질이 "우수"하고 소비자 평가에 있어 "컬 불량률이 낮다"고 답변('22.4.13. 제출)함

<sup>31)</sup> 평활도(flatness)란 폴리아미드 필름 표면의 평탄한 정도를 말하며, 필름의 표면에 투영된 이미지의 왜곡 정도로 평활도를 평가하고, 평활도 불량 시 필름이 국부적으로 우는 현상, 웨이브 등의 결함이 발생함(효성화학(주) 추가답변서('22.5.26. 제출)

<sup>32)</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서('22.5.25. 제출)

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조사대상물품과 컬(Curl) 방지 기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제품의 특정위치에서만 대체가능한 것으로 이것으로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sup>33</sup>)

#### 2) 신청인측 주장

- 신청인은 국내의 다수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교차 사용하고 있고, 두 물품간의 경쟁으로 판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등락 하는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이 유사하고 소비자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sup>34</sup>)
- 또한, 신청인에 따르면, 컬(Curl) 방지 기능은 포장봉투 제조에 있어서 완제품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동 기능이 있는 제품의 수요업체는 일부 "삼방봉투(삼면이 밀봉된 봉투)" 포장소재 제조 업체에 한정된다고 주장함35)
  - 신청인은 컬(Curl) 방지 기능은 동시이축연신 제품만의 고유 특성은 아니며,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중앙(Center)부분과 원형 다이법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도 컬(Curl) 방지 기능이 유사하다고 주장함
  - 또한, 포장봉투 제작에 폴리아미드 필름과 함께 합지36)되는 선형 저

<sup>33)</sup>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품질 차이 관련, 조사답변서에서 수입자 크라운화학(주)은 품질은 차이 "없음"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과 "대동소이 또는 더 좋다"고 답변('22.4.11. 제출)하였고, 수요자 xxx(수요 2사)은 품질 "차이없음"으로 답변 ('22.4.13. 제출)함

<sup>34)</sup> 조사신청서 및 신청인의 국내생산자 답변서('22.4.25. 제출)

<sup>35)</sup>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도 국내시장에 식품포장용 BOPA 필름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국내 거래처는 약 xxx개이고, 이중 컬(Curl) 품질 이슈를 제기한 업체는 xxx개사, 총 xxx건이며, 공급받은 소량(1~5개 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품질문제가 된 매출액은 약 xxx백만원으로, 이는 해당 거래처에 대한 총 매출액 xxx백만원의 xxx%수준임(신청인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및 신청인의 추가 답변서('22.5.27. 제출))

<sup>36)</sup> 신청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봉투형태의 포장소재는 인쇄된 표면 필름(1급지)과 내용물을 채우고

밀도 폴리에틸렌(LLDPE)의37) 제품 안정성이 최근 향상되어 폴리아미드 필름에 약간의 컬(Curl)이 발생하더라도 컬(Curl)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여, 최종 제품에는 컬(Curl)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아울러, 대부분의 포장수요가 동시이축연신 제품만을 요구한다면, 그 가격이 폭등했을 것이고, 원형 다이법 방식과 축차이축연신 방식 제조사는 없어졌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는바, 결국 컬(Curl) 방지기능이 높은 필름에 대한 수요는 수요자의 사업상황에 따른 것이지 국내수요의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함38)
- 한편, 신청인은 수입자가 동시연신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자 한다면 효성화학(주)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서도 충분히 구매가능하며, 효성화학(주)의 중국산 물품도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컬(Curl)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생산품과 동일한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함39)

## 3) 조사실 검토

- 효성화학(주) 등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들은 동시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일부 조사대상물품(특히 중국산)은 컬(Curl) 방지기능 등 일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국내생산품 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i)신청인이 다수의 수요자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을 교차 사용하고 있고 두 물품간의 경쟁으로 판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등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ii)다른 일부 수입자와 수요자들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점, iii)신청인은 동시이축방식 조사대상물품은

밀폐를 위한 Sealing 필름(2급지)로 구성됨. 이때 1급지는 PET 필름(BOPET)와 폴리아미드 필름(BOPA)가 주로 사용되며, 2급지로는 LLDPE(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를 사용함. 제조된 포장소재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90μm~ 100μm이며, 이때 1급지의 두께는 15μm ~ 25μm, 2급지는 60μm ~ 75μm가 사용됨(신청인의 추가 답변서, '22.5.27. 제출)

<sup>37)</sup> 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는 분자구조가 선형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필름화한 제품으로, 가볍고, 신축성, 가공성이 좋음(신청인 추가 답변서, '22.5.30. 제출)

<sup>38)</sup> 신청인의 추가 답변서('22.5.27. 제출)

<sup>39)</sup> 신청인의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서('22.6.2.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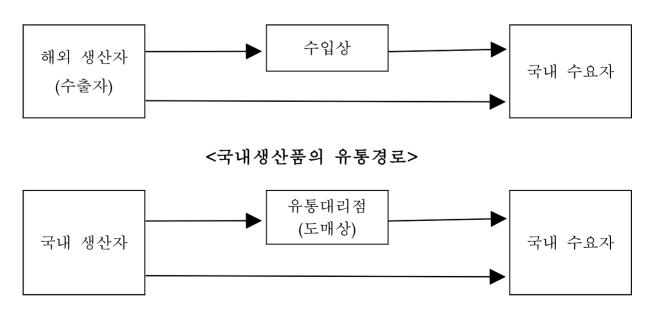
일부 삼방봉투 제조용 수요에 한정되며 삼방봉투 제조 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이 합지됨에 따라 컬(Curl)이 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iv)포장수요가 동시이축연신 제품만을 요구했다면, 가격이폭등하고 원형 다이법 방식과 축차이축연신 방식 제조사는 없어졌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는바, 컬(Curl) 방지기능 필름에 대한 수요는 수요자의 사업상황에 따른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v)신청인이 제출한 FITI시험연구원의 물리적 특성 비교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모두 KS 허용기준 내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 수입자 및 수요자들 간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볼 때, 추후 본 조사에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바. 유통경로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대리점 또는 수입자 단계를 거쳐서 최종수요자에게 유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유통경로가 유사함

#### <조사대상물품의 유통경로>



#### 사. 검토 종합

- 국내생산품은 조사대상물품과 품명, 정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는 동시이축연신 방식의 조사대상물품이 축차이축연신 방식의 국내생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주장을 하였음
-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 및 소비자 평가가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다는 신청인과 다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들의 주장, 신청인이 제출한 FITI시험연구원의 물리적 특성 비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시이축연신방식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그 물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평가에 있어서도 품질 수준에 큰 차이가 없거나 유사하여 대체가능한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 수입자 및 수요자들 간에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볼 때, 추후 본 조사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 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
  - 1)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 (주) 등 3개사임

#### <국내생산자 현황>

- 2.2.2.2	2020년도		조사신청	찬·반 여부	국내산업	피해지표
국내생산자	생산량(톤)40) 비중(%) 조사신청서 모		무역위확인	포함여부	제출여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찬성	찬성	포함	제출
(국내산업 합계)	(xxx)	(1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xxx	xxx	무응답	무응답	제외	제외
효성화학(주)	xxx	xxx	무응답	반대	제외	제외
국내생산자 합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의견서 및 국내생산자 답변서

<sup>40) &#</sup>x27;20년도 기준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수치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제출한 조사신청서 자료,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22.1.14. 제출한 자사의 답변서 자료, 효성화학(주)가 '21.12.17. 제출한 자사의 답변서 자료를 각각 사용함

## 2) 수입자

(단위 : 톤 ,%)

수입자	수입량(톤)	비 중(%)	수입자 답변서 제출 여부(1)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미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미제출
XXX	xxx	xxx	미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미제출
XXX	xxx	xxx	제출
xxx	xxx	xxx	미제출
xxx	XXX	xxx	미제출
기타	xxx	xxx	-
합계	XXX	100.0	2 2 2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20년도 수입량 합계 기준, 총 수입자 xxx개사)

## 3) 수요자

ㅇ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

<sup>41)</sup> 국내수입자 10개사 및 국내수요자 9개사(이 중 4개사는 수입자와 중복)에 대해 질의서를 송부('22.3.3.)하였으나, 답변서를 제출한 국내수입자는 효성화학(주), (주)크라운화학, (주)플 러스팩, xxx 등 4개사이며, 답변서를 제출한 국내수요자는 xxx, xxx 등 2개사임

#### 나. 국내산업의 범위

#### < 검토할 사항 >

- ㅇ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ㅇ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 ②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가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 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 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 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 동 수입품이 이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 WTO 반덤핑협정 제4.1조

-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예외가 있다.
- (i)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42)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하생략)

#### 1) 국내생산자

○ 해당 국내산업 주무부처(화학산업팀)<sup>43)</sup>에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스트리 (주), 효성화학(주) 등 3개사임

## 2)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 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조사 대상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하지 않은 생산자,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 등은 국내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sup>42)</sup>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a)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b)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c)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up>43)</sup> 조사신청물품과 동종물품인 폴리아미드 필름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임 ('22.1.17. 주무부처 의견서 접수)

- 이에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 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 또는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조사신청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인더 스트리(주)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인 인도네시아 PT. KOLON INA社의 지분 78.75%를 보유하고 있고 그 출자목적이 경영참여이며 종속회사로 포함시키고 있어색)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오롱인더 스트리(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PT. KOLON INA社로부터 조사대상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대상 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xxx% 및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물량의

<sup>44)</sup>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21.11.15. 공시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1.9월 분기보고서 중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에서는 PT. KOLON INA社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배관계 근거"를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회계기준서 1110호 7)"라고 표시하고 있고, "타법인 출자현황(상세)"에서는 PT. KOLON INA社에 대한 "출자목적"을 "경영참여"로 표시하고 있음

xxx%45)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으로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대상물품의 공급자인 인도네시아의 PT. KOLON INA社와 특수관계에 있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특수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PT. KOLON INA社로부터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 효성화학(주)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조사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효성화학(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대상물품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바, 이는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조사대 상물품 전체 수입물량의 xxx% 및 對중국 수입물량의 xxx%46)에 해당 하는 수입물량으로서 효성화학(주)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로 볼 수 없 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효성화학(주)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이전 6개월 이내('21.5.1.~'21.10.31.)에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이 근소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효성화학(주)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라)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결과

<sup>45)</sup>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21.5.1.~'21.10.31. 기간 중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조사대상 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XXX%이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XXX%임

<sup>46)</sup>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21.5.1.~'21.10.31. 기간 중 효성화학(주)의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 약 XXX톤은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XXX%이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對중국 조사대상물품 수입물량(약 XXX톤)의 XXX%임

- 이상의 검토 결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등 국내생산자 3개사 중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효성화학(주)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본 건 예비조사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1개 국내생산자만 포함됨
- 이에 조사실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20년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합계(xxx톤)는 국내산업의 국내총생산량(xxx톤)의 100%로서,
- 본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함

#### <국내생산자 현황>

- n a a a	2020년도     조사신청 찬·반 여부       생산량(톤) <sup>47)</sup> 비중(%)     조사신청서 무역위확인		조사신청 :	찬·반 여부	국내산업	피해지표
국내생산자			포함여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찬성	찬성	포함	제출
(국내산업 합계)	(xxx)	(1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xxx	XXX	무응답	무응답	제외	제외 (제출 <sup>48)</sup> )
효성화학(주)	xxx	xxx	무응답	반대	제외	제외 (제출 <sup>49)</sup> )
국내생산자 합계	xxx	100.0				

\* 자료 : 조사신청서, 품목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의견서 및 국내 생산자 답변서

<sup>47) &#</sup>x27;20년도 기준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수치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제출한 조사신청서 자료,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22.1.14. 제출한 자사의 답변서 자료, 효성화학(주)가 '21.12.17. 제출한 자사의 답변서 자료를 각각 사용함

<sup>48)</sup>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사실이 "국내 생산자 질의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22.5.4. "국내생산자 답 변서"를 임의제출함

<sup>49)</sup> 효성화학(주)는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사실이 "국내생산자 질 의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22.6.30.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임의제출함

## 3) 국내산업의 범위 및 국내산업 피해지표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 가) 효성화학(주)측 주장50)

- 효성화학(주)는 국내산업의 범위와 관련, 국내생산의 xxx%수준인 신청 인(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은 대표성이 없으므로, 국내생산의 xxx%를 차지 하는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도 국내생산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효성화학(주)는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대상 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 사업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국내산업 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임의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강행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효성화학(주)가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였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국내산업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국내생산의 약 xxx%를 점하는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경우, 국내생산의 약 xxx% 수준인 신청인의 경영실적만으로는 덤핑물품이 국내산업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아울러, 효성화학(주)는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며, 국내생산자의 생산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인 "Wood Mackenzie Chemical" Report(2021년)<sup>51)</sup>를 바탕으로 국내

<sup>51)</sup> Report에 기술된 국내생산자별 폴리아미드 필름의 '21년기준 생산능력은 아래와 같음 <국내생산자의 폴리아미드 필름 생산능력>

국내생산자	생산능력(톤/년)	비중(%)
효성화학(주)	XXX	XXX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xxx	xxx
코오롱인더스트리(주)	xxx	xxx
합 계	xxx	100.0

<sup>50)</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생산자의 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신청인의 추정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xxx%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또한, 효성화학(주)는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조사와 관련, WTO 반덤핑협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신청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덤핑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에서도 "덤핑 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함
- 따라서, 효성화학(주)는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덤핑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피해지표 뿐만 아니라, 조사신청서에서 누락된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의 경영 및 산업피해지표 등 증빙자료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국내 산업의 피해를 검토하여야 하며, 본 조사는 예비판정에서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효성화학(주)는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사실이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22.6.30.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임의제출함

## 나)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주장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조사실이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22.5.4.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임의제출함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국내생산자 답변서의 임의제출 사유를 무역 위원회가 국내산업 현황을 더 객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품 수불관리, 판매관리, 제품가격 등 대부분의 경영· 회계정보를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을 구분 관리하고 있어 수입품효과를 제거한 국내생산품에 한정하여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 다) 신청인측 주장52)

- 신청인측은 효성화학(주)가 조사개시결정의 오류나 추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 하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측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적 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바, 효성화학(주)의 억지주장은 고려할 필요 가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측은 이해관계인들의 답변서 제출이 완료된 現시점에서 효성화학(주)에게 산업피해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무역위원회가 효성화학(주)에게 수출자,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조사의 공정성 문제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측은 효성화학(주)가 자신의 산업피해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대상물품의 최대 수입자로서 자신의 산업피해 지표의 수입품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고 주장함
- 아울러, 신청인측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국내생산자 답변서의 질의사항 및 답변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화학 (주)가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동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제출기한內에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라) 조사실 검토

- 조사실은 "I.4.나.국내산업의 범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범위에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1개 국내생산자만 포함되므로, 본 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내산업"은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함
- 아울러, 조사실은 조사개시 여부 결정 시에도 이와 동일하게 국내산

<sup>52)</sup> 신청인의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에 대한 반박의견('22.5.16. 제출)

업의 범위를 정한 바 있으며53), 이와 같은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조사실은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효성화학(주)와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게 국내수입자 질의서를 발송('22.3.3.)하되, 국내생산자 질의서는 발송하지 아니하였음

-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제출한 국내생산자 답변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국내산업 현황 자료라는 주장과 관련,
- 조사실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국내생산자가 아니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국내산업 현황자료로 볼 수 없다고 봄
-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을 구분하여 회계관리하고 있어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제출한 국내생산자 답변서는 수입품 효과가 제거된 국내생산품에 한정된 답변이라는 주장과 관련,
- 이러한 주장과 달리, 조사실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수입품과 국내생산품 전체를 포함한 회사전체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수입정책, 생산정책, 가격 정책, 판매정책, 고용정책 등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
- 아울러, 위와 같은 구분 회계관리 주장과 달리, 직원 급여, 임차료, 운반비, 감가상각비 등 판매관리비와 영업이익 등은 회계상 구분되 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조사개시 결정 시 국내산업에서 제외된 조사대상물품 수입자인 효성화학(주) 및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국내생산자로 포함할 경우, 동 결정과 상반된 당초 조사실의 조사개시 결정의 타당성 여부도 다 툼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조사실은 본 건 예비조사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가 제출한 '국내생산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산업피해지표)' 등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

<sup>53)</sup> 조사개시여부 검토보고서(공개본) "Ⅱ.2.나.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pp.19~22.) 참조 (www.kpc.go.kr)

### 5.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 가. 개 관

-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54)에 따르면, 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은 '60년대말에서 '7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 형성되기시작하였으며, T-다이법(축차이축연신, 동시이축연신), 원형 다이법(Tubular법)등 대부분의 제조공정이 수십년에 걸쳐 사용되어 오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91년 공장설립), 효성화학(주)('96년 공장설립),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09.4월 사업개시) 등이 공장을 설립55)한 '90년대 초·중반이후 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폴리아미드 필름은 주요 경쟁제품인 PET필름과 OPP필름56)에 비해 충격강도, 관통저항성, 가스차단성 등의 특성이 우수하나, 동일 면적의 포장지를 제조할 때 단위당 비용이 가장 높은 점으로 인해 유연 포장재 부문 내에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형성하고 있음

#### 나. 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동향

-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에 따르면, '21년 기준 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은 약 xxx천톤(xxx억불) 규모이며, '16년~'21년 기간 중 세계 시장규모는 연평균 xxx% 성장하였음
  - '21년 기준 세계 생산능력은 약 xxx천톤 규모이며, 이 중 중국이 약

<sup>54)</sup> Report는 석유, 가스, 금속, 화학 등 천연자원산업 관련 컨설팅 및 리서치 분야에서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한 Wood Mackenzie社(미국 글로벌 데이터분석 기업, Verisk Analytics의 자회사)가 발간하는 리서치 보고서임

<sup>55)</sup>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홈페이지(www.kolonindustries.com)에 게재된 사업분야('91년 Nylon Film 생산(김천공장)), 효성화학(주) 홈페이지(www.hyosungchemical.com)에 게재된 브로슈어 ('96년 Installed Nylon Film Line in Daejeon Plant),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홈페이지 (www.jkmaterials.co.kr)에 게재된 연혁('09.4월 BOPA 필름 사업개시)을 각각 참조

<sup>56)</sup> 폴리아미드 필름(BOPA 필름)은 PA(Polyamide)6을 원재료로 하나, PET필름과 OPP필름(폴리 프로필렌 연신필름)은 각각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와 PP(Polypropylene)를 그 원재료로 하는 제품임

xxx%를 차지하는 등 세계 생산능력의 약 xxx%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

- '16년~'21년 기간 중 세계 수요는 약 xxx천톤 증가한 반면, 생산능력은 같은 기간 중 약 xxx천톤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인 공급능력 과잉상태임
- '21년~'26년 기간 중 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연평균 xxx% 증가 하여 '26년에는 약 xxx천톤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1년~'26년 기간 중 세계 생산능력은 연평균 xxx% 증가함 에 따라 공급능력 과잉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동향 및 전망(2016-26) >

(단위: 천톤, %, (변화율))

구 분	2016	2021	연평균증감율 ('16-'21)	2026	연평균증감율 ('21-'26)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세계 수요					

<sup>\*</sup> 자료 :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

○ 지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이 '21년기준 세계전체 수요의 xxx% 이상을 차지하며, '21년~'26년 기간 중 수요가 연평균 x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세계 지역별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동향 및 전망(2016-26) >

(단위: 천톤, %)

구 분	2016	2021	연평균증감율 ('16-'21)	2026	연평균증감율 ('21-'26)
아시아					
유럽					
북미					
기타					
세계 수요					

<sup>\*</sup> 자료: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

- 아시아 지역 내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중국의 경우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성숙시장 국가들과 향후 수요 증가 및 생산능력 확대가 전망되는 인도네시아, 태국57)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분됨
  - '21년 기준 중국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약 xxx천톤 규모로 세계 전체 수요의 약 xxx%를 차지하며, '21년~'26년 기간 중 연평균 x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1년 기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xxx천톤 규모로 세계 전체 수요의 약 xxx%를 차지하며, '21년~'26년 기간 중 연평균 xxx%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아시아 지역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동향 및 전망(2016-26) >

(단위: 천톤, %)

구 분	2016	2021	연평균증감율 (′16-′21)	2026	연평균증감율 ('21-'26)
중 국					
중국제외 아시아					
아시아 전체					

<sup>\*</sup> 자료 :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

○ '21년 기준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용도별 세계 수요는 식품 포장용이 세계 전체 수요의 약 xxx%를 차지하고, 비식품 포장용(리필용 세제 및 물비누 팩, 의약품 등)이 약 xxx%, 기타 산업용이 약 xxx% 수준임

## 57) < 아시아 지역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동향 및 전망(2015-25) >

(단위: 천톤, %)

구 분	2015	2020	연평균증감율 (′15-′20)	2025	연평균증감율 ('20-'25)
중 국					
중국제외 아시아					
한 국					
인도네시아					
태 국					
아시아 전체					

<sup>\*</sup> 자료: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0.11월)

## < 용도별 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동향 및 전망(2016-26) >

(단위: 천톤, %)

구 분	2016	2021	비중	연평균증감율 ('16-'21)	2026	연평균증감율 ('21-'26)
식품 포장용						
비식품 포장용						
(포장용 소계)						
기타 산업용						
전체 합계						

<sup>\*</sup> 자료 :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

### 다. 국내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현황

○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에 따르면, '21년 기준 한국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xxx천톤 규모로 '16년이후 연평균 xxx% 증가 하였으며, '21년~'26년 기간 중 연평균 xxx%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

## < 한국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동향 및 전망(2016-26) >

(단위: 천톤, %)

구 분	2016	2021	연평균증감율 ('16-'21)	2026	연평균증감율 ('21-'26)
생산능력					
국내수요					

<sup>\*</sup> 자료: Wood Mackenzie Chemicals 보고서('21.12월)

#### 라. 국내수급 현황

- 국내의 폴리아미드 필름 수요는 '21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 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해외소비(수출)가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 국내의 폴리아미드 필름 공급은 '21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 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해외공급(수입)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함

(단위 : 톤, 백만원, %)

(27, 72, 72, 78)									
연도 구분		′18년	'19년 <sub> </sub>		′20년		′21¹	년	
			10 L	*/ L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요	국내 소비 (내수)	물량	<u>1,000</u>	<u>1,208</u>	20.8	<u>1,234</u>	2.1	<u>1,339</u>	8.5
		금액	<u>10,000</u>	<u>10,322</u>	3.2	<u>8,617</u>	△16.5	<u>11,221</u>	30.2
	해외 소비 (수출)	물량	<u>1,000</u>	<u>816</u>	△18.4	<u>673</u>	△17.5	<u>555</u>	△17.6
		금액	<u>10,000</u>	<u>6,958</u>	△30.4	<u>5,102</u>	△26.7	<u>5,079</u>	△0.5
합계		물량	<u>1,000</u>	<u>1,100</u>	11.0	<i>1,094</i>	△1.5	<u>1,143</u>	4.5
됩게 	14 기 -	금액	<u> 10,000</u>	<u>9,565</u>	$\triangle 4.4$	<u>7,825</u>	△18.2	<u>9,837</u>	25.7
라 그	국내 공급	물량	<u>1,000</u>	<u>940</u>	△6.0	<u>869</u>	△7.6	<u>923</u>	6.2
	· (판매)	금액	<u>10,000</u>	<u>8,0,81</u>	△19.2	<u>6,476</u>	△19.9	<u>7,879</u>	21.7
	해외 공급 (수입)	물량	<u>1,000</u>	<u>1,318</u>	31.8	<u>1,368</u>	3.8	<u>1,411</u>	3.1
		금액	<u>10,000</u>	<u>11,304</u>	13.0	<u>9,407</u>	△16.8	<u>12,132</u>	29.0

- \* 자료 : 조사신청서
- \* 국내소비(내수) = 국내공급(판매) 해외소비(수출) + 해외공급(수입)
- \* 국내공급(판매) = 국내출하 + 수출

# 6. 비밀취급 여부 검토

####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성격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인 경우,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ㅇ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 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 1. 제조워가
  - 2.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인)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 (조사대상공급자) 공급자 답변서
- (이해관계인)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이해관계인회의 의견서 등

## 2) 정부 서류

○ 본 예비조사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등

####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사유 제출 여부

- (신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조사대상공급자)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ㅇ (이해관계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 (신청인) 신청인은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현금흐름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sup>58)</sup>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조사대상공급자) 조사대상공급자는 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회사 매출액 분석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이해관계인) 수입자, 수요자 등은 수입실적, 판매실적, 재고량, 국내 및 해외 거래선, 유료 구매자료59) 등의 자료는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를 요청함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상기 비밀취급 요청자료와 성질상 비밀로 취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자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sup>58)</sup>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자국수요 및 초과공급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Wood Machenzie Chemicals가 발간한 보고서(2020.11월 및 2021.12월)를 제출함

<sup>59)</sup> 효성화학(주)은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능력 추정치의 근거자료로 Wood Machenzie Chemicals가 발간한 보고서(2021.12월)의 통계자료를 제출함

이익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 비밀 취급 요청 서류의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마. 기타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는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 Ⅱ. 덤핑사실

####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 조사개시 당시, 조사실은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약 10여 개(중국 xxx개, 태국 xxx개, 인도네시아 xxx개) 공급자를 확인하였음
  - 그러나, 조사기간 내에 모든 공급자에 대해 덤핑사실 조사 및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impracticable)하므로 WTO 반덤핑협 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입량이 큰 순 서대로 조사대상 공급자를 선정함
  - 그 결과, 중국의 '더저우동홍', '효성자싱', 태국의 '에이제이피', 인도 네시아의 '코롱이나'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對한국 수출비중은 중국의 xxx%, 태국의 xxx%, 인도네시아의 xxx%에 해당함
  -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중 중국의 '더저우동홍', '효성자싱', 태국의 '에이제이피' 등 3개 업체는 조사참여신청서를 제출('22.3.18.~21.)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 및 협조의사를 표명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코롱이나'는 대응하지 않았음
  - 조사개시('22.2.28.) 당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의 자발대응 신청은 없었음

#### 2. 덤핑사실 조사경과

- 조사실은 '22.2.28. 덤핑률 조사를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음 (답변기한: '22.4.11.)
  - 조사대상공급자 중 중국의 더저우동홍, 효성자싱, 태국의 에이제이피는 답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각 연장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당초 '22.4.11.이었던 답변기한을 '22.4.25.로 2주 연장하고 이를 통보하였음
  - 중국과 태국의 조사대상공급자는 연장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인도네시아의 코롱이나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조사실은 '22. 6. 17. 조사대상공급자 에이제이피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 하였음 (답변기한: '22. 6. 24.)
  - 에이제이피는 연장된 기한 내에 보충질의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22. 6. 22. 조사대상 공급자 더저우동홍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답변기한: '22. 6. 28.)
  - 더저우동홍은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22. 6. 24. 조사대상공급자 효성자성에게 보충질의서를 발송 하였음(답변기한: '22. 6. 30.)
  - 효성자싱은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22. 6. 30. 조사대상공급자 에이제이피에게 2차 보충질의서를 발송하였음(답변기한: '22. 7. 4.)
  - 에이제이피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
- 조사실은 '22. 7. 13.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함

## 3. 조사대상물품의 물품통제코드(CCN60)) 변경에 대한 요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 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sup>(1)</sup>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sup>(2)</sup> 동안 조사 대상물품의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효성 자싱의 의견 제출('22.3.28.)이 있어 조사실은 이를 종합 검토함
- 효성자성은 조사실이 제시하고 있는 물품통제코드가 ①등급, ②두께, ③표면처리, ④형태의 네 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용도 또는 기능에 대해서도 구분할 것을 요청함
- 이에 조사실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①피 신청인이 제시하는 용도 기준은 객관적인 산업기준이 아니며, ②제품이 용도별로 구분되지 않는 공급자가 존재하고, ③구매자 또는 수요자는 생산자가 정한 제품구분에 맞춰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물품을 구별하는 확정적 요소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고, 기존의 물품통제코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22.4.22.)

<sup>60)</sup> Control Code Number

<sup>61)</sup>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5호, 2022.02.28.)

<sup>62)</sup>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제1항

#### 4.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 <중국>

가.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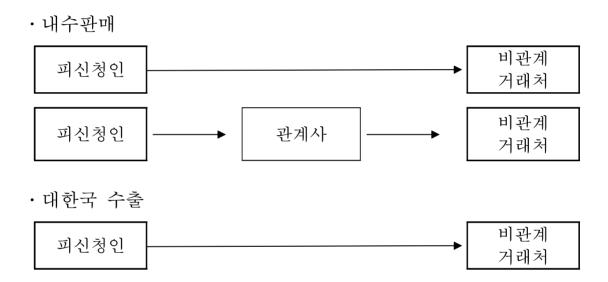
####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더저우동홍은 생산자 겸 수출자<sup>63</sup>)로 중국의 산동성 더저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xxx(xxx)임
- 더저우동홍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사가 있음
- 창저우패킹(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은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xxx xxx xxx
- 창저우필름(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은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xxx xxx
- 충칭밍주(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는 중국 충칭시에 소재하고 있고, xxx xxx
- 창저우플라스틱(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은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 소재하고 있고, xxx xxx
- 조사대상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생산량은 더저우동홍 xxx톤, 창저우패 킹 xxx톤, 창저우필름 xxx톤, 충칭밍주 xxx톤임

<sup>63)</sup> 조사대상기간 이후의 변경사항: 더저우동홍은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 법인을 생산 제품에 따른 사업부를 분할하였음. 존속법인은 비대상제품인 xxx(xxx)을 생산하고, 신규 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이하 "New Material")은 조사대상제품인 폴리아미드 필름을 생산함. 법인 분할 후 xxx가 더저우동홍의 xxx%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xxx이 New Material의 xxx%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 더저우동홍에서 담당하던 폴리아미드 필름의 한국수출은 분할 이후 현재까지 New Material이 담당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조사대상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더저우동홍은 xxx톤(xxx RMB, 한화 약 xxx원), 창저우패킹은 xxx톤(xxx RMB, 한화 약 xxx원)의 조사대상물품을 한국에 직접 수출함
- 조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의 경우 관계사 또는 비관계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대한국 수출의 경우 모두 비관계 거래처에 대한 직접판매를 통해 이루어짐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경로>



## 2) 답변서 제출현황

○ '22. 2. 28.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4.11.)

○ '22. 3. 21.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2. 4. 4.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2. 4. 8. : 답변기한 연장 통보('22.4.11.→'22.4.25. 2주 연장)

○ '22. 4. 25. : 답변서 접수

○ '22. 6. 22.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 6.28.)

○ '22. 6. 28.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3) 답변서 검토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 4)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 및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두께, ③표면처리, ④형태를 제시함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기한 내에 별도 의견 없이⑷ 답변서를 제출하였으

므로 조사실은 기송부된 CCN 안내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 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 6) 정상가격

- 가)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물량이므로, 내수 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CCN별 비교시에도 내수판매량이 대한국수출량의 5% 미만인 CCN은 없음

(단위: kg)

구 분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sup>64)</sup> 피신청인은 물품통제코드(CCN) 관련 의견제출기한인 4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연장된 답변서 제출기한에 이르러서야 답변서 내에 CCN 구성에 관한 자사의 의견을 포함 하여 제출하였음. 이는 CCN 관련 의견 제출기한인 '22.3.28일에서 4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여타 피신청인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이에 피신청인은 CCN의 구성을 변경 하고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생산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급을 세분화하고자 요청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실은 등급변경은 CCN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22.7.13. 이해관계인 회의)

- 나)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검증 결과, 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판매가격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가중평균판매가격의 98%~102% 범위 내에 해당하는 xxx%이므로, 통상의 상거래로 인정함<sup>65</sup>)
  -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및 특수관계자 거래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워가60)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KG)

구분	내수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sup>65)</sup> xxx

<sup>66)</sup>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를 조정함

#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KG)

7 H	정상가격		조정된		
구분	(A)	내륙운임	신용비용	포장비	정상가격 (C=A-B)

## 7) 덤핑가격

##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은 대한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였으므로 한국에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내륙운임, 핸들링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신용비용, 수수료 및 포장비를 조정함

#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KG)

	덤핑가격		조정요소(B)		조정된
구분	(A)	내륙운임,	해상운임,	신용비용,	덤핑가격
	(23)	핸들링	해상보험료	수수료	(C=A-B)

### 8) 과세가격

○ 피신청인은 대한국수출 시 CIF67)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관세법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 9)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5.18%임

(단위: RMB/KG)

구 분	대한국 수출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예비덤핑률							

\* 예비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sup>67)</sup>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나.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그 관계사

###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효성자싱은 생산자 겸 수출자로 중국 저장성(Zhejiang Province)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xxx임
- 조사대상물품인 폴리아미드 필름과 타이어코드, 테크니컬얀(Technical Yarn), 폴리에스터 원사(Polyester Yarn) 등을 생산, 판매함
- 효성자싱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수의 관계사가 있음
  - 효성화학(주)은 xxx
  - 효성티앤씨(주)는 xxx
  - 효성트랜스월드(주)<sup>68)</sup>는 xxx
- 조사대상기간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량은 xxx톤임
- 可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 한국, 제3국 시장에 판매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물품의 대한국수출물량은 xxx톤, 수출금액은 xxx RMB(한화 약 xxx원)임
  - 내수판매의 경우 모두 비관계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대한국 수출의 경우 모두 관계사 또는 비관계사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짐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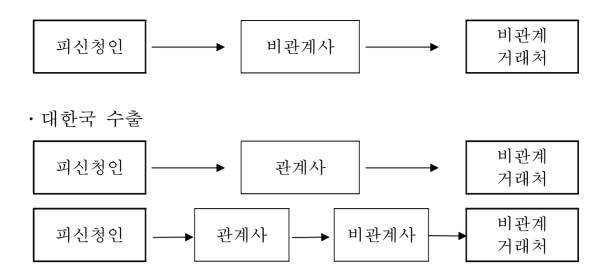
 · 내수판매

 피신청인

 비관계

 거래처

<sup>68)</sup> xxx



## 2) 답변서 제출현황

- '22. 2. 28.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4.11.)
- '22. 3. 21.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2. 4. 4.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2. 4. 8. : 답변기한 연장 통보('22.4.11.→'22.4.25. 2주 연장)
- '22. 4. 25. : 답변서 접수
- '22. 6. 24.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 6. 30.)
- '22. 6. 30.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3) 답변서 검토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 4) 자료의 사용

○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 및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두께, ③표면처리, ④형태를 제시함
- 피신청인은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60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70 동안 조사대상물품의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부여되었음
  - '22.3.28. 효성자싱이 의견을 제출하여 조사실은 이를 종합 검토함
- 효성자성은 조사실이 제시하고 있는 물품통제코드가 ①등급, ②두께, ③표면처리, ④형태의 네 가지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용도 또 는 기능에 대해서도 구분할 것을 요청함
- 이에 조사실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①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용도 기준은 객관적인 산업 기준이 아니며,

<sup>69)</sup>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2-5호, 2022.02.28.)

<sup>70)</sup>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제1항

②제품이 용도별로 구분되지 않는 공급자가 존재하고, ③구매자 또는 수요자는 생산자가 정한 제품구분에 맞춰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물품을 구별하는 확정적 요소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물품통제코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22.4.22.)

## 6) 정상가격

- 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물량이므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다만, CCN별 비교시 내수판매량이 없거나 5% 미만인 xxx개 모델 (xxx, xxx)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단위: KG)

구 분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 나)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거래건이 없음
  -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COP Below Test)
    -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 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워가기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KG)

구분	내수 판매물량(A)	원가미만 판매물량(B)	원가미만판매비율 (C=B/A×100)	내수판매자료 사용여부

<sup>71)</sup>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구성가격의 산정

-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 내수판매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증 결과 내수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CCN에 대해 구성 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제조원가에 내수판매에서 발생한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값임

(단위: RMB/KG)

구분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생산원가	이윤	총구성가격
	(A)	(B)	(C=A+B)	(D)	(E=C+D)

##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륙운임, 창고비용, 신용비용, 포 장비용을 조정함

#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KG)

	과 사기 거	조정요	-소(B)	조정된	
구분	정상가격 (A)	내륙운임,	신용비용,	정상가격	
	(A)	창고비용	포장비용	(C=A-B)	

## 7) 덤핑가격

##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이 대한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륙운임,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핸들링 비용, 신용비용, 수수료, 포장비 등을 조정함
  - 피신청인이 특수 관계사인 효성화학을 통해 한국에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효성화학의 직·간접판매비, 이윤을 추가로 공제함

#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RMB/KG)

			조정요	보소(B)		
구분	덤핑가격 (A)	내륙운임, 핸들링, 해상운임보 험,수수료	신용비용, 포장비	한국내 핸들링, 창고비, 운반비	한국내 간접판매비 및 이윤	조정된 덤핑가격 (C=A-B)

# 8) 과세가격

○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구매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격을 과세가격(CIF 기준)72)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함

## 9)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5.08%임

(단위: RMB/KG)

구 분	대한국 수출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예비덤핑률							

<sup>\*</sup> 예비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sup>72)</sup>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다.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5.12%를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조사대상공급자	대한국 수출량(KG)	예비덤핑률(%)	가중평균(%)
더저우동홍		5.18%	
효성자싱		5.08%	
	가중평균 덤핑률		5.12%

#### <태국>

## 가.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

##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 현황

- 에이제이피(이하 '피신청인')는 생산자 겸 수출자로 태국 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는 xxx임
- 조사대상기간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 생산량은 xxx톤임
- 피신청인의 지분은 xxx의 xxx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으며, 관계사로 'xxx'가 있으나, 조사대상물품의 생산·판매 관련 활동을 영위하지는 아니함
- 피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시장, 한국 및 제3국에 조사대상 물품 및 OPP 필름 등을 판매함
-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물품의 대한국 수출물량은 xxx톤, 수출금액은 xxx THB(한화 약 xxx원)임
- 피신청인은 재심사대상물품의 내수판매 및 대한국수출 시 무역상을 경유하지 않고 고객사와 직접 거래함

#### <조사대상물품의 판매경로>

• 내수판매

## 2) 답변서 제출현황

○ '22. 2. 28.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4.11.)

○ '22. 3. 21. :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

○ '22. 4. 4. : 답변기한 연장신청

○ '22. 4. 8. : 답변기한 연장 통보('22.4.11.→'22.4.25. 2주 연장)

○ '22. 4. 25. : 답변서 접수

○ '22. 6. 17.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 6.24.)

○ '22. 6. 24. :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

○ '22. 6. 30. : 2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 7. 1.)

○ '22. 7. 1. : 2차 보충질의서 답변서 송부

# 3) 답변서 검토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수판매 자료, 대한국 수출판매 자료,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필요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검토함

# 4) 자료의 사용

 조사실은, 피신청인이 조사질의서 및 보충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및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5) 물품구분기준

○ 조사실은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을 구분하는 물품통제코드(Control Code Number, 이하 'CCN') 구성방법으로 ①등급, ②두께, ③표면처리,

#### ④형태를 제시함

○ 피신청인은 CCN 안내서를 제공받고, CCN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기회를 가졌으며, 별도 의견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실은 이를 기준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함

# 6) 정상가격

- 가)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물량이 정상가격 결정의 기초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증함
  - 피신청인의 총 내수 판매량은 대한국 수출량의 5%를 초과한 xxx%로 물량 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물량이므로 내수판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 다만, CCN별 비교시 내수판매량이 5% 미만인 xxx개 모델(xxx)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함

(단위: KG)

구 분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C=A/B×100)

- 나) 내수판매 가격의 통상거래가격 여부 검토
  -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가격이 통상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과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을 실시함
  - (1)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거래건이 없음
  - (2) 원가미만 판매여부 검증 (COP Below Test)
    -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통과한 CCN에 대하여 단위당 순송 장가격과 단위당 생산원가<sup>73</sup>)를 비교함
    - 원가미만 판매 물량이 2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미만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고, 20%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거래건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함

(단위: KG)

구분	내수	원가미만	원가미만판매비율	내수판매자료
, _	판매물량(A)	판매물량(B)	(C=B/A×100)	사용여부

<sup>73)</sup>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구성가격의 산정

- ㅇ 내수판매량이 충분하지 않은 모델에 대해 구성가격을 적용함
  - 구성가격은 제조원가에 내수판매에서 발생한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값임

(단위: THB/KG)

구분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등	생산원가	이윤	총구성가격
	(A)	(B)	(C=A+B)	(D)	(E=C+D)

## 라) 정상가격의 조정

○ 정상가격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륙운임, 보험, 신용비용, 포장비용을 조정함

# 조정된 정상가격 산정내역

(단위: THB/KG)

구분	정상가격 (A)	조정요소(B) 내륙운임, 신용비용, 보험 포장비용		조정된 정상가격 (C=A-B)

## 7) 덤핑가격

#### 가) 덤핑가격의 적용

○ 피신청인이 대한국수출 시 비특수관계자인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제 수출가격을 적용함

#### 나) 덤핑가격의 조정

○ 덤핑가격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내륙보험, 해상운임, 신용비용, 커미션, 포장비용 등을 조정함

#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THB/KG)

	덤핑가격	조정 5	조정된	
구분	(A)	ગામાં મે		덤핑가격 (C=A-B)
		예정단법	포장비 등	

## 8) 과세가격

○ 피신청인은 대한국수출 시 CIF<sup>74</sup>)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수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sup>74)</sup> Cost, Insurance and Freight

## 9)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24.81%임

(단위: THB/KG)

구 분	대한국 수출량 (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 차액 (C=A-B)	과세 가격 (D)	덤핑률 (E=C/D ×100)	가중평균 덤핑률 (F)
예비덤핑률							

<sup>\*</sup> 예비덤핑률은 모델별 덤핑률을 대한국 수출물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 나.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의 덤핑률인 24.81%를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 <인도네시아>

## 가. 코롱이나(PT. KOLON INA)

#### 1) 공급자 개요

○ 코롱이나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한국수출실적이 있어 조시개시결정 시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에 대응하지 않았음

### 2) 답변서 제출현황

○ '22. 2. 28. :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22.4.11.)

○ '22. 3. 21. :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기한(조사참여신청서 미제출)

○ '22. 4. 11. : 답변서 제출기한(답변서 미제출)

### 3) 자료의 사용

○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 부속서 2<sup>75</sup>)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및 신청인의 조사신청서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함

# 4) 정상가격

- 정상가격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고려한 조사신청서 상의 정상가격자료를 사용함
  - 신청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조사대상물품 생산자는 xxx 개 회사만 있는 공급과점 시장이며, 조사대상물품이 주로 B to B로 거래되고,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내수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없음

<sup>75)</sup> WTO 반덤핑협정 부속서 2 제7조: ".....(전략)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 이에 조사대상물품의 제조원가(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판매관리비,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함<sup>76)</sup>

(단위: USD/KG)

제조원가(a)	판관비(b)	생산원가(c=a+b)	적정이윤(d)	구성가격(e=c+d)

 신청서에 따르면, 조정요소는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이 공개되지 않아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공정한 비교를 위해 덤핑가격의 조정요소 에서도 내륙운반비 등의 직접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5) 덤핑가격

- 덤핑가격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상 코롱이나(PT KOLON INA)가 조사대상기간 ('20.7.1.~'21.6.30.) 동안 수출한 조사대상물품의 평균수입단가(CIF 가격)를 사용함
  - 수입통관자료를 통해 산출된 평균 수입단가는 xxx USD/KG임
- 조정요소는 신청인이 해상운송업체(xxx)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를 통해 산정된 인도네시아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 자료를 사용함까

# 조정된 덤핑가격 산정내역

(단위: USD/KG)

조정전 덤핑가격	조정요	조정된 덤핑가격	
(A)	보험료	해상운임	(C=A-B)

76) ①xxx

2xxx

 $\Im xxx$ 

4xxx

(5)XXX

77) xxx

## 6) 과세가격

○ 관세청 통관자료 상 피신청인 물품의 수입단가는 모두 CIF 조건이므로 해당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함

#### 7) 예비덤핑률

○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피신청인의 예비덤핑률은 46.71%임

(단위: USD/KG)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최종덤핑률 (E=C/D×100)

## 나. 그 밖의 공급자

- WTO 반덤핑협정 제9.4조의 (i) 및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예비덤핑률은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의 덤핑률인 46.71%를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및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를 의미함

#### 5.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

○ 조사실이 조사대상기간('20.7.1.~'21.6.30.) 중의 피신청인들의 덤핑사실을 조사한 결과, WTO 반덤핑협정 제5.8조78)에서 규정한 최소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5.08~46.71%의 예비덤핑률이 산정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되는 덤핑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대응 여부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대응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 및 그 관계사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대응
	그 밖의 공급자	5.12%	-
ri) 그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	24.81%	대응
태국	그 밖의 공급자	24.81%	-
인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	46.71%	미대응
네시아	그 밖의 공급자	46.71%	-

<sup>78) &</sup>quot;(전략)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마진은 최소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후략)"

### Ⅲ. 국내산업의 피해

## 1.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

####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이 발전(확립)중인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전중인 산업이라고 인정되면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 및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를 비교 하여 검토함

#### 관련 법규

-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IV.5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단 근거)
-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에 관한 조사·판정은 관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생산자가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경우에는 산업의 안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립과정에 있는 산업으로 보며, 덤핑물품으로 인한 당해 산업의 실질적 지연 여부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판단함
- ·사업계획 또는 산업여건상 기대경영성과의 타당성
- •기대경영성과와 실제경영성과의 비교
- 국내산업의 안정성 여부는 국내생산물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생산의 기간·생산의 성격·국내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생산설비의 안정적 가동 여부, 합리적인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국내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확보 여부 등에 근거하여야 함
- 국내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은 '90년대 초·중반이후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09.4월부터 폴리아미드 필름 사업을 개시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바79), 국내산업은 이미 발전(확립)된 산업임
- 따라서, 본 건 조사에서 국내산업 발전(확립)의 실질적 지연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없음

<sup>79)</sup>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91년, 효성화학(주)는 '96년,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09.4월, 각각 폴리아미드 필름 사업을 개시함

#### 2.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여부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 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 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제3.1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a)덤핑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물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b)동 수입품이 이러한 물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 \*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 WTO반덤핑협정 제3.2조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WTO반덤핑협정 제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가. 덤핑물품80)의 누적 평가 적용 여부

#### < 검토할 사항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인 경우에 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누적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함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 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덤핑차액 :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 덤핑물품 수입량
      - ·특정 공급국으로부터 국내 수입량이 국내 전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 그러나 특정 공급국으로부터 국내 수입량이 국내 전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인 경우,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특정 공급국들로 부터 국내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전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때에는 특정 공급국 모두를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3.3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5조 제8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b)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sup>80)</sup> 예비덤핑률 조사에서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미소덤핑마진 이상의 덤핑률이 산정되었으므로, 이후 이 보고서에서 조사대상물품을 '덤핑물품'이라 함(관세법 상의 표현과도 일치시킴)

### 관련 법규

○ 한-중 FTA협정 7.13조

2개국 이상의 수입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간 경쟁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 1) 덤핑물품의 미소덤핑마진 및 미소수입물량 조건 충족 여부

- 덕핑물품의 공급국별 예비덤핑률은 각각 중국 5.08~5.18%, 태국 24.81%, 인도네시아 46.71%로 미소덤핑마진 기준인 2% 이상임
- 조사대상물품의 총수입물량 대비 덤핑물품의 국가별 수입물량 비중은 덤핑률 조사대상기간('20.7월~'21.6월) 동안 중국산 xxx%, 태국산 xxx%, 인도네시아산 xxx%<sup>81)</sup>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 이상임

# 2) 경쟁조건의 판단기준

○ 덤핑물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덤핑물품 상호간 및 덤핑물품과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들 간의 대체사용 가능성, 유통채널의 유사성,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함

# 3) 덤핑물품간 경쟁조건

가) 신청인측 주장82)

<sup>81)</sup> 덤핑률 조사대상기간(POI) 1년간 총 수입물량 xxx톤 중 중국산 xxx톤(xxx%), 태국산 xxx톤 (xxx%), 인도네시아산 xxx톤(xxx%) (자료: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sup>82)</sup> 국내생산자 답변서('22.4.25. 제출) 및 추가 답변서('22.5.23. 제출)

○ 신청인은 덤핑물품 간에 물품의 구성요소 및 용도, 생산방법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신청인을 제외한 국내생산자들은 덤핑물품과 국내생산품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는 점, 대형 국내수입자는 덤핑물품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다는 점 등은 덤핑물품간에 경쟁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나)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 국내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덤핑물품의 누적적 평가와 관련한 덤핑물품간 경쟁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다) 조사실 검토

- 중국산, 태국산 및 인도네시아산 덤핑물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청인 주장과 같이 덤핑물품간에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제조방법, 유통경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함
-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매년 국내시장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으므로 같은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 조사대상기간 중 톤당 판매가격을 보면, 중국산은 xxx~xxx천원, 태국 산은 xxx~xxx천원, 인도네시아산은 xxx~xxx천원으로 연도별로 다소 차이 는 있지만 유사한 가격대에 있으며, 덤핑물품 중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 균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태국산(△8.6%)은 시장점유율이 확대(6.0%p) 되었으나 연평균 가격 하락폭이 가장 작은 인도네시아산(△2.4%)은 시장점유 율이 축소(△4.8%p)된 점 등을 볼 때, 덤핑물품은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 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천원/톤, %)

	연도	′18년	′19 <sup>1</sup>	년	′20¹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산	물량	<u>1,000</u>	<u>1,482</u>	48.2	<u>1,387</u>	$\triangle 6.4$	<u>1,402</u>	1.1	11.9
3 4 건	단가	<i>10,000</i>	<u>8,774</u>	△12.3	<u>6,962</u>	△20.7	<u>8,878</u>	27.5	△3.9
태국산	물량	<i>1,000</i>	<u>43,935</u>	4293.5	<i>252,161</i>	473.9	<i>241,289</i>	△4.3	522.6
네 시간	단가	<i>10,000</i>	<u>6,544</u>	△34.6	<u>6,240</u>	△4.6	<i>7,567</i>	21.3	△8.9
인도네시아산	물량	<i>1,000</i>	<u>643</u>	△35.7	<u>684</u>	6.3	<u>707</u>	3.4	△10.9
신도네시아신	단가	<u> 10,000</u>	<i>9,773</i>	△2.3	<i>7,806</i>	△20.1	<i>9,304</i>	19.2	△2.4
국내	물량	1,000	<u>1,044</u>	4.4	<i>1,032</i>	△1.1	<u>1,230</u>	19.2	7.2
동종물품	단가	<u> 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변화율))

	연도 <sup>2</sup> 분	′18년	'19년 증감률	'20년 증감률	'21년 증감률	증감률 ('18~'21)
동	종물품		(\(\triangle 5.4\%p)	(△1.1%p)	(3.3%p)	(△3.2%p)
덤	핑물품		(6.8%p)	(1.2%p)	(△4.6%p)	(3.4%p)
	중국산		(10.4%p)	(△4.7%p)	(\(\triangle 3.5\%p\)	(2.2%p)
	태국산		(1.2%p)	(5.6%p)	(△0.8%p)	(6.0%p)
	인도네시아산		(△4.8%p)	(0.2%p)	(△0.3%p)	(△4.8%p)
7]	타국産 수입물품		(△1.4%p)	(△0.1%p)	(1.3%p)	(△0.1%p)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4) 덤핑물품과 동종물품83)간 경쟁조건

# 가) 신청인측 주장84)

○ 신청인은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구성요소 및 사용용도가 동일 하고, 생산방식이 유사하며, 일부 국내생산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여 판매 하고 있고,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덤핑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국내산업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sup>83)</sup> 이하 이 보고서에서 '동종물품'이란 국내산업이 생산하는 국내 동종물품을 말함

<sup>84)</sup> 국내생산자 답변서('22.4.25. 제출) 및 추가 답변서('22.5.23. 제출)

- 신청인은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그 주요 구성요소가 폴리아미드로 동일하고, 모두 폴리아미드를 연신하여 제조하므로 생산방법이 동일 하며, 모두 식품, 의약품 등의 포장소재로 사용되어 용도도 동일하고, 동일한 수요자에 대해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나) 수입자 및 수요자측 주장

- 국내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덤핑물품의 누적적 평가와 관련하여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음
- 그러나,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는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들은 조사답변서에서 덤핑물품의 수입이유 중의 하나로 "저렴한 가격"을 들고 있어,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85)

# 다) 조사실 검토

- 조사실은 신청인,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대체로 가격과 품질 등이 고려되어 그 수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되는 것으로 보이며,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의 저가로 판매되었으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도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보임

<sup>85) &#</sup>x27;덤핑물품의 수입이유'와 관련, 조사답변서에서 수입자 효성화학(주)는 수요업체는 "일정수준의 품질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가격을 우선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22.4.25. 제출)하였고, 수입자 크라운화학(주)는 덤핑물품은 "국내생산품 보다 품질이 동일하거나 우수하며, 가격도 저렴하여 일반적으로 수입산 위주로 구매"한다고 답변('22.4.11. 제출)하였으며, 수요자 (주)인코팩(수요2사)은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과 품질 차이가 미미하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 구입"한다고 답변('22.4.13. 제출)하였음

- 아울러, 본 보고서 "I.3.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여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일부 수입자 및 수요자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생산품은 덤핑물품과 물리적 특성, 구성요소 및 용도, 품질 및 소비자 평가, 유통경로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 수입자 및 수요자들간에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볼 때, 추 후 본 조사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천원/톤,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੮	<u>년</u> 증감률	′20\	년 증감률	′21૬	<sup>년</sup>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8,862</u>	△11.4	<u>7,032</u>	△20.7	<u>8,871</u>	26.2	△3.9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가격차이(a-b)	Δ	Δ		Δ		Δ		-
가격비율(a/b)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5) 종합 검토

- 이상 검토 결과,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덤핑물품은 미소덤핑마 진 및 미소수입물량 이상이며, 국내시장에서 덤핑물품간 상호 경쟁조 건에 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도 상호 경쟁조건에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누적적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신청인과 수입자 및 수요자들간에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볼 때, 추후 본 조사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나.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

# 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 효과

#### < 검토할 사항 >

○ 덤핑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제3.2조 중

덤핑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가) 덤핑물품 수입물량의 절대적 증가 여부

○ 덤핑물품 수입물량은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1,355톤</u>, '20년 <u>1,410톤</u>, '21년 <u>1,420톤</u>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4% 증가하였음

# < 덤핑물품 수입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	′18년	′19¹	년	′20¹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덤핑물품	물량	<u>1,000</u>	<u>1,355</u>	35.5	<u>1,410</u>	4.0	<u>1,420</u>	0.7	12.4
수입	금액	10,000	<u>12,010</u>	20.1	<u>9,913</u>	△17.5	<i>12,594</i>	27.0	8.0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 나) 덤핑물품 수입의 상대적 증가 여부

- 폴리아미드 필름의 국내소비량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 하였음
-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은 연평균 12.4% 증가하고, 기타국산 수입물량도 연평균 9.0% 증가하는 등 총 수입물량이 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나,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동 기간 중 상대적으로 낮은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그쳤음
- 덤핑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18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xxx%로 상승하다가 '21년 xxx%로 하락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하였음
- 반면, 국내 동종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18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xxx%로 하락하다가 '21년 xxx%로 반등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중 3.2%p 하락하였음
- 한편,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8년 xxx%에서 '19년 xxx%, '20 년 xxx%로 하락하다가 '21년 xxx%로 반등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0.1%p 소폭 하락하였음

### < 국내소비 및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

		연도	′18년	'19 <sup>1</sup>	년	′20¹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86)
=	국내소비	물량	<u>1,000</u>	<u>1,208</u>	20.8	<u>1,234</u>	2.1	<u>1,339</u>	8.5	10.2
	(a=b+e)	금액	<u>10,000</u>	<u>10,322</u>	3.2	<u>8,617</u>	△16.5	<u>11,221</u>	30.2	3.9
	총수입	물량	<u>1,000</u>	<u>1,318</u>	31.8	<u>1,368</u>	3.8	<u>1,411</u>	3.1	12.2
	(b=c+d)	금액	<u>10,000</u>	<u>11,304</u>	13.0	<u>9,407</u>	△16.8	<u>12,132</u>	29.0	6.7
τ	검핑물품	물량	<u>1,000</u>	<u>1,355</u>	35.5	<u>1,410</u>	4.0	<u>1,420</u>	0.7	12.4
	수입(c)	금액	<u>10,000</u>	<u>12,010</u>	20.1	<u>9,913</u>	△17.5	<u>12,594</u>	27.0	8.0
7	기타국산	물량	<u>1,000</u>	<u>787</u>	△21.3	<u>781</u>	△0.7	<i>1,295</i>	65.7	9.0
	수입(d)	금액	<u>10,000</u>	<u>7,995</u>	△20.0	<u>7,034</u>	△12.0	<u>9,970</u>	41.7	△0.1
Ţ	동종물품	물량	<u>1,000</u>	<u>1,044</u>	4.4	<u>1,032</u>	△1.1	<u>1,230</u>	19.2	7.2
내	수판매(e)	금액	<u>10,000</u>	<u>8,885</u>	△11.1	<u>7,460</u>	△16.0	<i>9,886</i>	32.5	△0.4
시	덤핑물품	-(c/a)			(6.8%p)		(1.2%p)		(△4.6%p)	(3.4%p)
장점유율	기타국산	(d/a)			(△1.4%p)		(△0.1%p)		(1.3%p)	(△0.1%p)
율	동종물품	-(e/a)			(△5.4%p)		(△1.1%p)		(3.3%p)	(△3.2%p)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 국내시장점유율 현황 그래프 >

(단위:%)

# <u><비공개></u>

<sup>86)</sup> 본 보고서에서 시장점유율, 가동률, 영업이익률, 투자수익률, 비중 등 관련 지표의 연평균증감률과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 중('18~'21년) 증감률 변동폭(%p)과 연도별 증감률 변동폭(%p)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이후 본 보고서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 < 검토할 사항 >

- 덤핑물품의 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 는지 여부를 검토함
-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저가판매 되었는지 또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인하 또는 가격인상 억제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함

##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 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WTO반덤핑협정 제3.2조 중

덤핑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수입품의 저가판매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가)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비교

-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8년 <u>10,000천원</u>에서 '19년 <u>8,862천원</u>, '20년 <u>7,032천원</u>으로 하락하였으나, '21년 <u>8,871천원</u>으로 상승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9% 하락하였음
- 이에 비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18년 <u>10,000천원</u>에서 '19 년 <u>8,510천원</u>, '20년 <u>7,227천원</u>으로 하락하였으나, '21년 <u>8,036천원</u>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7.0% 하락하였음
- ㅇ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으며,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은 연도별 판매가격 등락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보임

####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천원/톤, %)

연도 구분	′18년	′19년 증감률	′20년 증감률	′21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i>8,862</i> △11.4	<u>7,032</u> △20.7	<u>8,871</u> 26.2	△3.9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i>8,510</i>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덤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2.15%)

#### <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그래프 >

(단위: 천원/톤)

### <u><비공개></u>

# 가) 수입자측 주장87)

- 효성화학(주)는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되고 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기준이 적절한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덤핑물품은 수입상의 판관비(예, 운반비)와 이윤 등이 추가되어 수입가격과 대리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가격은 차이가 있는바, 신청인의 국내 동종물품의 최종 판매가격과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함

<sup>87)</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 의견서('22.5.25. 제출)

### 나) 신청인측 주장88)

○ 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낮으며, 덤핑물품의 재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

### 다) 조사실 검토

- 국내 동종물품 및 덤핑물품 가격비교 기준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여 최 초로 판매하는 공장도 판매가격 기준임
- 공장도 판매가격은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최초로 판매한 가격이므로, 신청인이 최초로 유통대리점(또는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덤핑물품 공급자가 최초로 국내 수입자(수입상 또는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공장도 판매가격임

<sup>88)</sup> 신청인의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에 대한 반박의견('22.6.2. 제출)

# 나)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

## (1)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여부

- 전체 조사대상기간 동안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저가에 판매되었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 대비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21년 xxx%의 낮은 판매가격 수준을 보였음
- 국내 동종물품 대비 덤핑물품의 가격차이도 '18년 △xxx천원, '19년 △xxx천원,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으로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 기조를 보여주고 있음

#### < 덤핑물품 및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19년 중 <sup>×</sup>	감률	′20년	<u>년</u> 증감률	′21 ર	<u>년</u>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i>8,862</i> △1	11.4	7,032	△20.7	<u>8,871</u>	26.2	△3.9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i>8,510</i> △1	14.9	<i>7,227</i>	△15.1	<u>8,036</u>	11.2	△7.0
가격차이(a-b)	Δ	Δ		Δ		Δ		-
가격비율(a/b)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2)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국내 동종물품 보다 저가 판매되었음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연평균 3.9% 하락한데 대해 국내 동종물품은 연평균 7.0% 하락하였음
- ㅇ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

된 점,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었고(연평균 0.7%) 내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계속 상승한점,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한점 등을 고려할때,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은 덤핑물품의 낮은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임

### < 국내 동종물품과 덤핑물품 판매가격 >

(단위: 천원/톤, %, (변화율))

		연도	′18년	′19¹	년	′20¹	년	′21 <sup>1</sup>	견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5	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제조원:	가(b)	<u>10,000</u>	<u>8,867</u>	△11.3	<u>7,645</u>	△13.8	<u>10,213</u>	33.6	0.7
	제조원:	가비중(b/a)								
	영업이	익(내수)	10,000	<i>5,189</i>	△48.1	<u>3,127</u>	△39.7	<u>1,687</u>	△46.0	△44.7
τ	컴핑물품	두 판매가격	<u>10,000</u>	<u>8,862</u>	△11.4	<u>7,032</u>	△20.7	<u>8,871</u>	26.2	△3.9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3)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상승을 억제시켰는지 여부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 보다 '18년에는 xxx천원 높았으나, 이후 '19년에는 xxx천원, '20년에는 xxx천원, '21년 에는 xxx천원 낮았으며, 지속적으로 가격차이가 확대되는 추세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은 목표판매가격 대비 '18년 xxx%, '19 년 xxx%, '20년 xxx%, '21년 xxx%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 국내 동종물품의 목표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

(단위: 천원/톤, %, (변화율))

연도 구분	′18년	<b>'</b> 19५	<sup>년</sup> 증감률	′20 ર	년 증감률	′21૬	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0</u>	<u>8,862</u>	△11.4	<u>7,032</u>	△20.7	<u>8,871</u>	26.2	△3.9
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a)	<u> 10,000</u>	<u>9,046</u>	△9.5	<u>8,024</u>	△11.3	<u>10,334</u>	28.8	1.1
동종물품 실제판매가격(b)	<u>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단위당 제조원가	<u>10,000</u>	<u>8,867</u>	△11.3	<u>7,645</u>	△13.8	<u>10,213</u>	33.6	0.7
가격차이 (a-b)								
가격비율 (b/a)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1) 동종물품 목표판매가격 = (단위당 제조원가 + 단위당 판매관리비) ÷ (1 - 목표영업이익률89)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보다 지속적으로 저가로 판매되었고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등락 방향이 일치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19년 이후 국내 동종물품의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가격차이가 확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가격이 상승 억제되어 제조원가 변 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도록 덤핑물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sup>89)</sup> 신청인측은 덤핑물품의 수입영향이 가장 적다고 판단되는 신청인의 2018년도 국내 동종물품 영업이익률 xxx%를 목표영업이익률로 적용함(신청인 답변서, '22.5.23. 제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21조에 따르면,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덤핑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시장점유율의 상당한 증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국내산업의 이익률' 등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 검토할 사항 >

- 국내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지표에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함
  -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 생산량감소·가동률하락·재고증가·판매량감소·시장 점유율축소·가격하락·이윤감소·투자수익감소·고용감소·임금하락·자본 조달애로·투자축소 등

#### 관련 법규

- ㅇ 관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 WTO반덤핑협정 제3.4조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마진의 크기,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조사대상기간 중 연간 약 xxx천톤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국내산업의 생산량은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912톤</u>, '20년 <u>864톤</u>으로 각각 8.8%, 5.3%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u>864톤</u>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감소하였음
- ㅇ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동일한 수준이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가동률도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로 하락하였으나, '21년 에는 xxx%로 소폭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11.2%p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생산량과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수입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 생산현황 >

(단위 : 톤, %, (변화율))

연도	/101 ਜੋ	′19¹	년	′20년		′21	년	연평균
구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0.0
생산량(b)	<u>1,000</u>	<u>912</u>	△8.8	<u>864</u>	△5.3	<u>864</u>	0.1	△4.7
가동률(b/a)								(△11.2%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2) 판매 및 재고

- 국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956톤</u>, '20년 <u>890톤</u>으로 감소하였으나, '21년 <u>928톤</u>으로 상승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2.5% 감소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1,044톤</u>으로 4.4% 증가하였으나, '20년에는 <u>1,032톤</u>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고, '21년에는 <u>1,230톤</u>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 으로는 연평균 7.2% 증가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870톤</u>, '20년 <u>946</u> <u>톤</u>, '21년 <u>529톤</u>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9.1% 감소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가 연평균 10.2% 증가하고, 기타국산 수입물량이 연평균 9.0%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이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덤핑물품 수입물량이 연평균 12.4%의 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내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량 감소(연평균 △4.7%)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량이 크게 증가(연평균 7.2%)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큰 폭으로 감소(연평균 △19.1%)한 것 으로 보임

##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변화율))

	연도	/101 <del>1</del>	′19	년	′20	)년	′21	l년	연평균
구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1,957</u>	95.7	<u>1,702</u>	△13.0	<u>1,852</u>	8.8	22.8
생산량(b)	물량	<u>1,000</u>	<u>912</u>	△8.8	<u>864</u>	△5.3	<u>864</u>	0.1	△4.7
총출하	물량	<u>1,000</u>	<u>956</u>	$\triangle 4.4$	<u>890</u>	△6.9	<u>928</u>	4.3	△2.5
(c=d+e+f)	금액	<u>10,000</u>	<u>8,081</u>	△19.2	<u>6,476</u>	△19.9	<u>7,879</u>	21.7	△7.6
네스하네(4)	물량	<u>1,000</u>	<u>1,044</u>	4.4	<i>1,032</i>	△1.1	<u>1,230</u>	19.2	7.2
내수판매(d)	금액	<u> 10,000</u>	<u>8,885</u>	△11.1	<i>7,460</i>	△16.0	<i>9,886</i>	32.5	△0.4
<b>入えの(/。)</b>	물량	<u>1,000</u>	<u>816</u>	△18.4	<u>673</u>	△17.5	<u>555</u>	△17.6	△17.8
수출 <sup>90)</sup> (e)	금액	<u>10,000</u>	<u>6,958</u>	△30.4	<i>5,102</i>	△26.7	<i>5,079</i>	△0.5	△20.2
자가소비(f)	물량	<u>1,000</u>	<u>1,309</u>	30.9	<i>1,365</i>	4.3	<u>1,047</u>	△23.3	1.5
기말재고 (g=a+b-c)	물량	<u>1,000</u>	<u>870</u>	△13.0	<u>946</u>	8.8	<u>529</u>	△44.1	△19.1
재고율(g/c)	물량	다.버 기							(△3.3%p)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sup>90)</sup>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Local수출을 수출로 기장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들은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임(신청인 감사보고서 및 추가답변서, '22.4.25. 및 '22.5.23. 제출)

# 3) 시장점유율

-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8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xxx%로 하락하였으나, '21년 xxx%로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3.2%p 하락하였음
-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도 '18년 xxx%에서 '21년 xxx%로 조 사대상기간 중 0.1%p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과 기타국산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덤핑물품의 시장점유율이 '18년 xxx%에서 '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3.4%p 상승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변화율))

	연도	/101 f	′19년	′20년	′21년	증감률
Ŧ	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8~'21)
동	종물품		(\(\triangle 5.4\%p)	(△1.1%p)	(3.3%p)	(△3.2%p)
덤:	핑물품		(6.8%p)	(1.2%p)	(△4.6%p)	(3.4%p)
	중국산		(10.4%p)	(△4.7%p)	(△3.5%p)	(2.2%p)
	태국산		(1.2%p)	(5.6%p)	(△0.8%p)	(6.0%p)
	인도네시아산		(△4.8%p)	(0.2%p)	(△0.3%p)	(△4.8%p)
7]1	타국産 수입물품		(△1.4%p)	(△0.1%p)	(1.3%p)	(△0.1%p)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 국내시장점유율 현황 그래프 >

(단위:%)

# <u><비공개></u>

##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내수 판매가격은 '18년 <u>10,000천원</u>에서 '19년 <u>8,510천원</u>, '20년 <u>7,227천원</u>으로 각각 전년대비 14.9%, 15.1% 하락하였으나, '21년에는 <u>8,036천원</u>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7.0% 하락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18년 <u>10,000천원</u>에서 '19년 <u>8,867천</u> <u>원</u>, '20년 <u>7,645천원</u>으로 각각 전년대비 11.3%, 13.8% 하락하였으나, '21년에는 <u>10,213천원</u>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0.7% 소폭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제조원가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은 제조원가의 xxx~xxx%를 차지한 단위당 재료비가 조사대상기간 중 그 하락폭(연평균 △0.7%)이 미미하였고, 제조원가 중 비중이 낮은 단위당 노무비와 경비가 각각 연평균 5.4%, 5.1%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재료인 폴리아미드 레진은 국제석유가격에 연동되는바, 톤당 폴리아미드 레진 가격은 '18년 <u>10,000천원</u>에서 '21년 <u>9,527천원</u>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음
- 이와 같이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7%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제조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인 폴리아미드 레진 가격도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6%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판매가격이 조사대상 기간 중 연평균 7.0% 하락한 것은 덤핑물품의 낮은 판매가격(연평균 △3.9%)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 (참조) III.2.다.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및 IV.2.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천원/톤, %, (변화율))

		연도	′18년	′19¹		′201	=	′21 <sup>1</sup>		연평균
_ ¬	7분		10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동	종물품 판매	가격(a)	<u>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_	위당 제조? =c+d+e)	원가	<u>10,000</u>	<u>8,867</u>	△11.3	<u>7,645</u>	△13.8	<u>10,213</u>	33.6	0.7
	재료비(c)		<u>10,000</u>	<u>8,369</u>	△16.3	<u>6,779</u>	△19.0	<u>9,780</u>	44.3	△0.7
	노무비(d)		<u>10,000</u>	<u> 10,947</u>	9.5	<u>11,377</u>	3.9	<u>11,722</u>	3.0	5.4
	경 비(e)		<u>10,000</u>	<u>10,330</u>	3.3	<u>10,137</u>	△1.9	<u>11,622</u>	14.6	5.1
	│당 제조원기 Ⅱ가격 대비)	가 비중								(19.2%p)
	재료비									(11.8%p)
	노무비									(2.4%p)
	경비									(5.0%p)
덤:	핑물품 판대	매가격	<u>10,000</u>	<u>8,862</u>	△11.4	<u>7,032</u>	△20.7	<u>8,871</u>	26.2	△3.9
동	동물품 생	산량	<u>1,000</u>	<u>912</u>	△8.8	<u>864</u>	△5.3	<u>864</u>	0.1	△4.7

\*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1) 단위당 제조원가 = 제조원가/생산량

주2) 덤핑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2.15%)

#### < 주요 워자재 가격 >

(단위: 천원/톤,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폴리아미드 레진	<u> 10,000</u>	<u>8,285</u>	△17.2	<u>6,502</u>	△21.5	<u>9,527</u>	46.5	△1.6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5) 덤핑마진의 크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예비덤핑률은 5.08~46.71%로 덤 핑마진의 크기가 미소마진 이상이므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덤 핑마진이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에 반영됨으로써 국내 동종물품의 판 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참조) Ⅱ.5. '덤핑사실 조사결과 종합'

# 6) 이윤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18년 <u>10,000백만원</u>에서 '19년 <u>5,189</u> <u>백만원</u>, '20년 <u>3,127백만원</u>, '21년 <u>1,687백만원</u>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 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4.7%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내수부문 영업이익률도 '18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xxx%, '21년 xxx%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조사대상기간 중 13.8%p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 악화 추세는 앞서 '가격 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핑물품의 국내 시장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을 인하(연평균 △7.0%)한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 (참조) Ⅲ.2.다.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 효과'

###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 (변화율))

연도	/101 <del>d</del>	′19	년	′20	년	′21		연평균
구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0</u>	<u>8,885</u>	△11.1	<u>7,460</u>	△16.0	<i>9,886</i>	32.5	△0.4
매출원가(b)	<u>10,000</u>	<u>9,470</u>	△5.3	<i>7,982</i>	△15.7	<u>11,589</u>	45.2	5.0
매출총이익(c=a-b)	<u>10,000</u>	<u>7,127</u>	△28.7	<i>5,891</i>	△17.3	<u>4,767</u>	△19.1	△21.9
판관비(d)	<u>10,000</u>	<u>10,979</u>	9.8	<u>11,384</u>	3.7	<u>10,886</u>	$\triangle 4.4$	2.9
영업이익(e=c-d)	<u>10,000</u>	<i>5,189</i>	△48.1	<u>3,127</u>	△39.7	<u>1,687</u>	△46.0	△44.7
영업이익률(f=e/a)							•	(△13.8%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가) 수입자측 주장

 수입자측은 내수시장에서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국내산업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 된다면서 '19년의 경우 판매관리비 중 감가상각비가 대폭 증가(전년대비 617%)한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91)

## 나) 신청인측 주장92)

- 신청인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매출량\*(연평균 7.2%)은 증가하였으나 내수 매출액은 감소(연평균 △0.4%)하였는바, 운반비 등 판매관리비는 매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연평균 2.9%)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함
  - \* (참조) III.2.라.2) '판매 및 재고' 및 III.2.라.6) '이윤'
- 아울러, '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증가는 지속가능한 경영차원에서 이루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함
  - \* (참조) III.2.라.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다) 조사실 검토

-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내수 매출액의 감소(연평균 △0.4%) 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량 증가(연평균 7.2%)에 따라 판매관리비가 증가 (연평균 2.9%)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증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로 인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sup>91)</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sup>92)</sup> 신청인의 추가 답변서('22.5.27. 제출)

# 7) 투자수익률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투자수익률은 '18년 xxx%에서 '19년 xxx%, '20년 xxx%, '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15.7%p 하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 < 내수부문 투자수익현황 >

(단위: 백만원, %, (변화율))

연도	'19년 '18년		′20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 <sup>93)</sup> (a)	<u>10,000</u>	<i>5,189</i>	△48.1	<u>3,127</u>	△39.7	<i>1,687</i>	△46.0	△44.7
투자자산총액 <sup>94)</sup> (b)	<u>10,000</u>	<i>9,280</i>	△7.2	<u>9,085</u>	△2.1	<u>11,602</u>	27.7	5.1
투자수익률(a/b)								(△15.7%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8) 현금흐름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8년 <u>10,000백</u> <u>만원</u> 현금유입에서 '19년 <u>11,770백만원</u> 현금유입, '20년 <u>7,780백만원</u> 현금유입, '21년 <u>2,194백만원</u> 현금유입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9.7% 감소하였음
- 따라서,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 내수부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단위: 백만원, %)

연도	/101 -	′19년		′20년		′21년		연평균
구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현금흐름	<u>10,000</u>	<u>11,770</u>	17.7	<u>7,780</u>	△33.9	<u>2,194</u>	△71.8	△39.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sup>93)</sup>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임

<sup>94)</sup> 투자자산총액은 총 자산액 중 총 매출액 대비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매출액 비율임

# 9) 고용 및 임금

-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18년 <u>1,000명</u>에서 '19년 <u>943명</u>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20년 <u>981명</u>, '21년 <u>1,057명</u>으로 전년대비 각각 4.0%, 7.7% 증가하면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9% 증가하였음
- 1인당 평균임금은 '18년 <u>10,000천원</u>에서 '19년 <u>9,840천원</u>, '20년 <u>9,525</u> <u>천원</u>, '21년 <u>9,277천원</u>으로 매년 하락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5% 하락하였음
- 이상에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고용인원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임금은 지속 감소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명, 천원, 톤, %)

	연도	′18년	′19 <sup>1</sup>	년	′20¹	년	′21 <sup>μ</sup>	견	연평균
구분		10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연평균	생산직	<u>1,000</u>	<u>1,000</u>	0.0	<u>1,049</u>	4.9	<u>1,073</u>	2.3	2.4
고용 인원	사무직	<u>1,000</u>	<u>750</u>	△25.0	<u>750</u>	0.0	<u>1,000</u>	33.3	0.0
인원	계	<u>1,000</u>	<u>943</u>	△5.7	<u>981</u>	4.0	<u>1,057</u>	7.7	1.9
여펴규	생산직	<u>10,000</u>	<u>10,182</u>	1.8	<u> 10,090</u>	△0.9	<u>9,902</u>	△1.9	△0.3
연평균 1인당 임금	사무직	<u>10,000</u>	<u>9,540</u>	$\triangle 4.6$	<u>8,805</u>	△7.7	<u>7,890</u>	△10.4	△7.6
임금	평균	<u>10,000</u>	<u>9,840</u>	△1.6	<u>9,525</u>	△3.2	<u>9,277</u>	△2.6	△2.5
동종물품	생산량	<u>1,000</u>	<u>912</u>	△8.8	<u>864</u>	△5.3	<u>864</u>	0.1	△4.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가) 수입자측 주장

○ 수입자측은 '18~'21년 중 동종물품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생산직 연평균 고용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방만한 고용관리가 손익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sup>95)</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 나) 신청인측 주장

○ 신청인은 중소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능하면 매년 신규인원을 채용하고자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21년의 고용인원 증가(xxx명)는 신입사원 등의 채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 다) 조사실 검토

-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고용인원은 생산직이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나, 사무직은 변동이 없음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 합계는 '18년 xxx명에서 '21년 xxx명으로 연평균 1.9% 증가하였는바,
- 이와 같은 국내산업의 고용인원 증가에 대해 방만한 고용관리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를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의 하나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sup>96)</sup> 신청인의 추가답변서('22.5.27. 제출)

# 10) 생산성

-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1인당 매출액 및 1인당 부가가치는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연평균 1.9%증가)에서 생산량, 총매출액 및 총부가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연평균 6.5~24.0%의 감소세를 보였음
- 1인당 생산량은 '18년 <u>1,000톤</u>, '19년 <u>967톤</u>, '20년 <u>880톤</u>, '21년 <u>818톤</u>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5% 감소하였음
- 1인당 매출액은 '18년 <u>10,000백만원</u>, '19년 <u>8,566백만원</u>, '20년 <u>6,600백</u> <u>만원</u>, '21년 *7,457백만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9.3% 감소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18년 <u>10,000백만원</u>, '19년 <u>7,145백만원</u>, '20년 <u>5,696</u> <u>백만원</u>, '21년 <u>4,393백만원</u>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4.0%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생산성 관련 지표가 악화된 것은 조사대상기간 중 고용인원이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sup>\*</sup> 덤핑물품 수입의 영향으로 생산량,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 (참조) III.2.라.1) '생산량 및 가동률', 2) '판매 및 재고', 6) '이윤'

####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토, 백만원, 명, 톤/명, 백만원/명, %)

			( 11 -	口 , 亡, 。	ÿ 단 편,	경, 근/ 경	, 딱긴ㅋ	
연도	′18년	′19¹	년	′20Կ	년	′21¹	<u> </u>	연평균
구분	10인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생산량(a)	<u>1,000</u>	<u>912</u>	△8.8	<u>864</u>	△5.3	<u>864</u>	0.1	$\triangle 4.7$
총매출액 <sup>97)</sup> (b)	<u>10,000</u>	<u>8,081</u>	△19.2	<u>6,476</u>	△19.9	<u>7,879</u>	21.7	△7.6
총부가가치 <sup>98)</sup> (c)	<u>10,000</u>	<u>6,741</u>	△32.6	<u>5,589</u>	△17.1	<u>4,642</u>	△16.9	△22.6
고용인원(d)	<u>1,000</u>	<u>943</u>	△5.7	<u>981</u>	4.0	<u>1,057</u>	7.7	1.9
1인당 생산량(a/d)	<u>1,000</u>	<u>967</u>	△3.3	<u>880</u>	△9.0	<u>818</u>	△7.1	△6.5
1인당 매출액(b/d)	<u>10,000</u>	<u>8,566</u>	△14.3	<u>6,600</u>	△22.9	<u>7,457</u>	13.0	△9.3
1인당 부가가치(c/d)	<u>10,000</u>	<u>7,145</u>	△28.5	<u>5,696</u>	△20.3	<u>4,393</u>	△22.9	△24.0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sup>97)</sup> 국내 동종물품 전체(내수판매 + 수출)의 매출액임

<sup>98)</sup> 총부가가치 = 법인세차감전손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 11) 성장성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내수부문에 있어서 매출액 감소와 지속적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하여 내부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등 성장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 성장성 관련 지표 >

(단위: 백만원, %, (변화율))

연도	′18년	′19	년	′20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연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내수 매출액	<u> 10,000</u>	<u>8,885</u>	△11.1	<i>7,460</i>	△16.0	<u>9,886</u>	32.5	$\triangle 0.4$
내수 영업이익	<u> 10,000</u>	<i>5,189</i>	△48.1	<i>3,127</i>	△39.7	<u>1,687</u>	△46.0	△44.7
시장점유율								(△3.2%p)
가동률								(△11.2%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12) 자본조달능력

○ 국내산업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인 내수부문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내부 자본조달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 < 자본조달능력 관련 지표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18년	′19 <sup>·</sup>	년 증감률	′20	년 증감률	′21	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총매출액100)	10,000	<u>8,081</u>	△19.2	<u>6,476</u>	△19.9	<u>7,879</u>	21.7	△7.6
- 내수 매출액	<u> 10,000</u>	<u>8,885</u>	△11.1	<u>7,460</u>	△16.0	<u>9,886</u>	32.5	$\triangle 0.4$
영업이익101)	10,000	<u>4,669</u>	△53.3	<u>2,643</u>	△43.4	<u>336</u>	△87.3	△67.7
- 내수 영업이익	<u> 10,000</u>	<u>5,189</u>	△48.1	<i>3,127</i>	△39.7	<u>1,687</u>	△46.0	△44.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sup>99)</sup>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별도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신청인의 국내생산자 답변서, '22.4.25. 제출)

<sup>100)</sup> 국내 동종물품 전체(내수판매 + 수출)의 매출액

<sup>101)</sup> 국내 동종물품 전체(내수판매 + 수출)의 영업이익

## **13)**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sup>102)</sup>

- 국내산업의 설비투자액은 '18년 <u>10,000백만원</u>에서 '19년 <u>11,767백만원</u>
   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으나, '20년 <u>5,479백만원</u>으로 전년대비 53.4% 감소하였고, '21년에는 <u>8,235백만원</u>으로 전년대비 50.3%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3% 감소하였음
- 한편, 국내산업의 연구개발비는 '18년 <u>10,000백만원</u>에서 '19년 <u>7,775백</u> <u>만원</u>, '20년 <u>6,861백만원</u>으로 전년대비 각각 22.2%, 11.8%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u>8,228백만원</u>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6.3% 감소하였음

####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18년	'19년 중감률		′20Կ	'20년 중감률		'21년 증감률	
설비투자	10,000	<u>11,767</u>	17.7	<u>5,479</u>	△53.4	<u>8,235</u>	50.3	△6.3
연구개발	10,000	<u>7,775</u>	△22.2	<u>6,861</u>	△11.8	<u>8,228</u>	19.9	△6.3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가) 수입자측 주장

 수입자측은 국내산업이 '19년 대규모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은 변동이 없는바, 생산능력의 변동이 없는 대규모 수익적 지출에 대한 규명과 무분별한 설비투자로 인한 손익악화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 하다고 주장함<sup>103)</sup>

# 나) 신청인측 주장

○ 신청인은 '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으로서, 설비투자는 조사대상

<sup>102)</sup> 신청인은 2012년 상설 연구소를 설립한 바, 동 연구소에서는 폴리아미드 필름의 물성 안정화, 제품 품질 개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제조공정 개선, 생산설비의 효율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신청인의 국내산업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 '22.4.25. 및 '22.5.25. 제출)

<sup>103)</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기간 중 매년 xxx억원 수준 내외로 지출된 바, 이는 생산설비를 신설할 정도의 투자금액은 아니며, 태양광설비, 저탄소냉난방장치 등의 친환경투자와 제조설비 중 일부인 슬리터의 교체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함<sup>104)</sup>

### 다) 조사실 검토

○ 신청인에 따르면, '18년 공장건물 신축 및 개선(약 xxx억원), '19년 태양 광발전 설비 신설(약 xxx억원), '20년 저탄소 배출 냉난방기 교체(약 xxx억원), '21년 슬리터 교체(약 xxx억원)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¹05)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내산업의 투자수익률\*(투자자산총액 대비 내수 영업이익 비율)이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신청인의 설비투자가 무분별한 것이고,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가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참조) Ⅲ.2.라.7) '투자수익률'

## 14) 검토 종합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 인원, 기말재고 등과 같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내수판매량, 시장점유율, 판매가격,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현금흐름, 임금, 성장성, 자본조달능력, 설비투자 및 연구 개발 등 대부분의 피해지표가 덤핑물품의 수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산업은 시장점유율 축소와 함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금흐름, 자본 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sup>104)</sup> 신청인에 따르면 1개 폴리아미드 필름 생산라인 신설에는 약 xxx~xxx억원이 소요된다고 함(신청인의 추가 답변서, '22.5.27. 및 '22.5.30. 제출)

<sup>105)</sup> 본 보고서 '참고3. 국내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참조

### Ⅳ.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 관련 법규

- ㅇ 관세법 제53조 제1항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ㅇ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① 무역위원회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 1. 덤핑물품의 수입물량(당해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생산이나 국내소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2. 덤핑물품의 가격(국내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3. 덤핑차액의 정도(덤핑물품의 수입가격이 수출국내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뚜 렷하게 하락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 4.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고용· 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 5.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 WTO반덤핑협정 제3.5조

덤핑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 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 첫째, 앞서 "Ⅲ.2.다.1) 덤핑물품 수입의 물량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증가(연평균 12.4%)하고 시장점유율이 확대('18년: xxx%→'21년: xxx%)됨에 따라 덤핑물품의 수입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 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물품은 조사대상기간 중 내수판매량 증가 (연평균 7.2%)가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고, 시장 점유율은 하락('18년: xxx%→'21년: xxx%)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앞서 "Ⅲ.2.다.2) 덤핑물품 수입의 가격효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은 국내 동종물품의 xxx~ 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되면서 연평균 3.9% 하락하였으며,
- 이로 인해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은 톤당 제조원가가 거의 변화가 없고(연평균 0.7%),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의 지속적인 상승(19.2%p)과 영업이익 감소 추세 속에서도 가격이 하락(연평균 △7.0%) 하였고, '19년이후 실제판매가격이 목표판매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그 가격차이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은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셋째, 이상과 같은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Ⅲ.2.라.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산업은 생산량 및 가동률의 하락, 시장점유율 축소와 함께, 제조원가 비중이 판매가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등이 제약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이 저해됨으로써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다음 표와 같이 일응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임

# < 덤핑물품과 주요 국내산업 피해지표 >

(단위 : 톤, %, 천원/톤, 백만원, 명, (변화율))

지표	연도 구분	′18년	<b>′</b> 19\	<u>년</u> 증감률	′20կ	년 증감률	′21 <sup></sup> \	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물	덤핑물품 수입	<u>1,000</u>	<u>1,355</u>	35.5	<u>1,410</u>		<u>1,420</u>		12.4
량	<u>' '</u>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1,044</u>	4.4	<u>1,032</u>	△1.1	<u>1,230</u>	19.2	7.2
시장	덤핑물품			(6.8%p)		(1.2%p)		(△4.6%p)	(3.4%p)
시장점마양	동종물품			(\times 5.4\%p)		(\(\triangle 1.1\%p\)		(3.3%p)	(△3.2%p)
	덤핑물품 판매가격(a)	<u>10,000</u>	<u>8,862</u>	△11.4	<u>7,032</u>	△20.7	<u>8,871</u>	26.2	△3.9
	동종물품 판매가격(b)	<u>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가	제조원가	<u>10,000</u>	<u>8,867</u>	△11.3	<u>7,645</u>	△13.8	<u>10,213</u>	33.6	0.7
- <sup>7</sup> · 격	(비중)								(19.2%p)
	· 가격차이 비율(a/b)								(8.9%p)
	목표판매 가격(b')	<u>10,000</u>	<u>9,046</u>	△9.5	<u>8,024</u>	△11.3	<u>10,334</u>	28.8	1.1
	· 가격차이 비율(b/b')								(\(\triangle 23.5\%p)\)
생신	<u></u> · 량	<u>1,000</u>	<u>912</u>	△8.8	<u>864</u>	△5.3	<u>864</u>	0.1	$\triangle 4.7$
가동	5률								(△11.2%p)
내수	-판매량	<u>1,000</u>	<u>1,044</u>	4.4	<u>1,032</u>	△1.1	<u>1,230</u>	19.2	7.2
중에게이이	내수부문 영업이익	<u>10,000</u>	<u>5,189</u>	△48.1	<u>3,127</u>	△39.7	<u>1,687</u>	△46.0	△44.7
이익	내수부문 영업이익률								(△13.8%p)
연평	<del>현</del> 고용인원	<u>1,000</u>	<u>943</u>	△5.7	<u>981</u>	4.0	<u>1,057</u>	7.7	1.9
	산성 1당부가가치)	<u>10,000</u>	<i>7,145</i>	△28.5	<u>5,696</u>	△20.3	<u>4,393</u>	△22.9	△24.0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 < 검토할 사항 >

- ㅇ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인에 대해 검토
- 덤핑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

#### 관련 법규

- ㅇ 관세법시행령 제63조
- ④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해야 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산업피해 등을 덤핑물품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3.5조 중

조사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가격, 수요 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상품생산성이 포함된다.

# 가.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폴리아미드 필름 수입물량은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787톤</u>, '20년 <u>781톤</u>으로 각각 전년대비 21.3%, 0.7%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u>1,295톤</u>으로 전년대비 65.7% 증가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9.0% 증가함
- 그러나,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은 '18년 xxx%에서 '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0.1%p 하락하였음
- 덤핑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조사대상기간 중 지속적으로 덤핑물품 보다 높았으며, 국내 동종물품 보다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변화율))

	연도	′18년	′19 <sup>1</sup>	년	′20¹઼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ا ا ا ا ا	수입물량	<u>1,000</u>	<u>787</u>	△21.3	<u>781</u>	△0.7	<i>1,295</i>	65.7	9.0
기타국산 물품	시장점유율			△1.4%p		△0.1%p		1.3%p	(△0.1%p)
<u> </u>	판매가격	<u> 10,000</u>	<u> 10,164</u>	1.6	<u>9,004</u>	△11.4	<u>7,700</u>	△14.5	△8.3
	수입물량	<u>1,000</u>	<i>1,355</i>	35.5	<u>1,410</u>	4.0	<u>1,420</u>	0.7	12.4
덤핑물품	시장점유율			6.8%p		1.2%p		△4.6%p	(3.4%p)
	판매가격	<u> 10,000</u>	<u>8,862</u>	△11.4	<i>7,032</i>	△20.7	<u>8,871</u>	26.2	△3.9
- n	판매물량	<u>1,000</u>	1,044	4.4	<i>1,032</i>	△1.1	<u>1,230</u>	19.2	7.2
국내 동종물품	시장점유율			△5.4%p		△1.1%p		3.3%p	(△3.2%p)
<u>2 2 5 B</u>	판매가격	<u> 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주) 덤핑물품·기타물품 판매가격=CIF가격+관세+통관제비용(2.15%)

## < 덤핑물품 이외 수입물품의 판매단가 현황 그래프 >

(단위 : 천원/톤)

# <비공개>

### 나. 국내소비 변화106)

- 폴리아미드 필름의 국내소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한 것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소비의 변화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신청인, 수입자, 수요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한 바 없음

####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구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1,208</u>	20.8	<u>1,234</u>	2.1	<u>1,339</u>	8.5	10.2
덤핑물품 수입	<u>1,000</u>	<u>1,355</u>	35.5	<u>1,410</u>	4.0	<u>1,420</u>	0.7	12.4
동종물품 내수판매	<u>1,000</u>	<u>1,044</u>	4.4	<u>1,032</u>	△1.1	<u>1,230</u>	19.2	7.2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다. 수출실적

# 1) 수입자측 주장107)

- 효성화학(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업피해(신청인의 경영지표 중 내수 판매에서의 영업이익의 악화)는 덤핑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수출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 증가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함\*
  - \* (참조) IV.2.마. '제품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설비투자'

# 2) 신청인측 주장

○ 신청인측은 수출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 보다 고정비 규모가 크지 않아 고정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바, 영업이익 감소의 주워인은 고정비 부담

<sup>106)</sup> 국내소비는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출하량과 수입량의 합계임

<sup>107)</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증가 보다는 덤핑물품으로 인해 제조원가 상승에 맞추어 판매가격을 적정하게 인상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주장함<sup>108</sup>)

○ 신청인은 수출 영업이익률이 내수 영업이익률 보다 낮은 이유는 해상 운송비, 해상보험료 등 수출비용 때문인바, COVID-19의 영향으로 '21년 해상운송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영업손익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sup>109</sup>)

## 3) 조사실 검토

- 국내 동종물품의 수출량은 '18년 <u>1,000톤</u>에서 '19년 <u>956톤</u>, '20년 <u>673톤</u>, '21년 <u>555톤</u>으로 매년 감소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7.8% 감소 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년 xxx%에서 '21년 xxx% 수준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17.5%p 하락하였음
- 톤당 수출 판매가격은 '18년 <u>10,000천원</u>, '19년 <u>8,530천원</u>, '20년 <u>7,583천원</u>, '21년 *9,160천원*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9% 하락하였음
- 수출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21년 △xxx%로 조사대상기간 중 21.4%p 하락하였음
- 조사실은 조사대상기간 중 변동비<sup>110</su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동 종물품의 단위당 원재료비는 연평균 0.7% 소폭 하락하였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한 단위당 제조원가도 연평균 0.7% 소폭 증가한데 그친바,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고정비의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 (참조) IV.2.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sup>108)</sup> 신청인의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에 대한 반박의견('22.5.16. 제출)

<sup>109)</sup> 신청인의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22.4.25. 및 '22.5.27. 제출)

<sup>110)</sup> 제품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는바, 고정비는 생산량이 변동되더라도 변동되지 않는 원가(예, 노무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및 수선비)이며, 변동비는 생산량이 변할 경우 그에 따라 변동되는 원가(예, 원재료비)임(신청인의 추가 답변서, '22.5.27. 제출)

- 조사대상기간 중 수출판매량이 연평균 17.8% 감소함에 따라 수출부문 영업이익률이 21.4%p 하락한데 비해 내수판매량은 연평균 7.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 영업이익률은 13.8%p 하락한 점 등을 볼 때,
- 수출실적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 증가가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손익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의견이 상충되는바, 추후 본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료가 추가로 입수되거나 이해관계인들이 추가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수출동향 >

(단위 : 톤, %, 천원/톤, (변화율))

연도	′18년	′19	년	′20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건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율
총출하량(a)	<u>1,000</u>	<u>956</u>	$\triangle 4.4$	<u>890</u>	△6.9	<u>928</u>	4.3	△2.5
수출량(b)	<u>1,000</u>	<u>816</u>	△18.4	<u>673</u>	△17.5	<u>555</u>	△17.6	△17.8
수출비중(b/a)								(\times17.5\%p)
수출 판매가격	<u> 10,000</u>	<u>8,530</u>	△14.7	<i>7,583</i>	△11.1	<u>9,160</u>	20.8	△2.9
내수판매량(c)	<i>1,000</i>	<u>1,044</u>	4.4	<u>1,032</u>	△1.1	<u>1,230</u>	19.2	7.2
내수비중(b/a)								(17.0%p)
내수 판매가격	<u> 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 동종물품 전체(내수+수출) 손익현황 >

(단위: 백만원, %, (변화율))

연도	′18년	′19	년	′20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영업이익(전체)	<u> 10,000</u>	4,670	△53.3	2,643	△43.4	336	△87.3	△67.7
내수 판매	<u> 10,000</u>	<i>5,189</i>	△48.1	<u>3,127</u>	△39.7	<u>1,687</u>	△46.0	△44.7
수출 판매	<u> 10,000</u>	<i>3,930</i>	△60.7	<u>1,957</u>	△50.2	Δ	적자전환	적자전환
영업이익률(전체)								(△15.8%p)
내수 판매								(△13.8%p)
수출 판매								(△21.4%p)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라.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xxx% 수준으로서, 주요 원재료는 폴리아미드 레진(resin)이며 기타 첨가제111) 등이 사용됨
  - \* 국내산업의 원재료비 구성('21년 기준): 폴리아미드 레진 xxx%, 기타 xxx%
- 톤당 폴리아미드 레진 가격은 '18년 <u>10,000천원</u>에서 '19년 <u>8,285천원</u>, '20년 <u>6,502천원</u>으로 전년대비 각각 17.2%, 21.5% 하락하였으나, '21년 에는 <u>9,527천원</u>으로 전년대비 46.5% 상승하여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1.6% 하락하였음
-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조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가 연평균 0.7% 하락한데 비해 제조 원가는 연평균 0.7%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대상기간 중 3.3%p 하락('18년 xxx%) → '21년 xxx%)하였음
-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폴리아미드 레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소폭 하락(연평균 △1.6%)한 것은 원가부 담 완화로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주요 원 자재 가격변동이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sup>111)</sup>폴리아미드 필름 제조 시 CAS(Calcium Stearate, 압출기內 마찰력 감소 역할),<br/>EBS(Ethylene Bis Stearamide, BOPA 원료 투입시 연신성 향상 역할), SML(Sorbitan<br/>Monolaurate, 압출 시 윤활유 역할), AB제(Anti Blocking, 필름표면이 점착되는 현상 방지 역할)<br/>등 다양한 종류와 용도의 첨가제를 사용함(신청인의 추가 답변서, '22.5.27. 제출)

#### <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 >

(단위: 천원/톤, %)

연도	′18년	′19	년	′20	년	′21	년	연평균
구분	10 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폴리아미드 레진	<u> 10,000</u>	<u>8,285</u>	△17.2	<u>6,502</u>	△21.5	<u>9,527</u>	46.5	△1.6
동종물품 판매가격	<u> 10,000</u>	<u>8,510</u>	△14.9	<u>7,227</u>	△15.1	<u>8,036</u>	11.2	△7.0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천원/톤, %, (변화율))

구	는 분	연도	′18년	′19 <sup>1</sup>	년 증감률	′20¹	년 증감률	′21¹	년 증감률	연평균 증감율
동종	등물극	품 판매가격(a)	10,000	<u>8,510</u>	△14.9	<u>7,227</u>	△15.1	<i>8,036</i>	11.2	△7.0
	7	제조원가(b)	<u>10,000</u>	<u>8,867</u>	△11.3	<u>7,645</u>	△13.8	<u>10,213</u>	33.6	0.7
		원재료비(c)	<u>10,000</u>	<u>8,369</u>	△16.3	<u>6,779</u>	△19.0	<u>9,780</u>	44.3	△0.7
		폴리아미드 레진	<u>10,000</u>	<u>8,060</u>	△19.4	<u>6,625</u>	△17.8	<u>9,812</u>	48.1	△0.7
		기타	<u>10,000</u>	<u>11,650</u>	16.5	<u>8,458</u>	△27.4	<u>9,557</u>	13.0	△1.5
		비중(c/b)								(△3.3%p)

<sup>\*</sup> 자료 :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 마. 제품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설비투자

## 1) 수입자측 주장112)

- 효성화학(주)는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피해(신청인의 경영지표 중 내수판매에서의 영업이익 악화)는 덤핑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i)품질 및 원가 등 제품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원재료가격 변동을 충분히 판매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한 점, ii)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 상각비의 급격한 상승, iii)수출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주장함
  - \* (참조) iii)수출판매 관련은 본 보고서 "IV.2.다. 수출실적"참조

<sup>112)</sup>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22.5.11. 제출)

## 2) 신청인측 주장113)

## <제품경쟁력 저하 관련>

- 폴리아미드 필름은 대부분 포장용, 특히 식품포장용 수요가 많고 그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산업으로서, i)조사대상기간 중 유의할 만한수요나 제조기술의 변화가 없는 점, ii)FIT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덤핑물품과 국내생산품간 물리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컬(curl) 발생 문제도 신청인의 전체 거래기업의 일부이고 전체 거래액의 xxx%에 불과한 점, iii)최대수입자인 효성화학(주)가 중국 '효성자 싱'으로부터 수입하는 덤핑물품도 신청인과 동일한 축차이축연신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국내생산품과 기본적인 품질이 유사하여 품질경쟁력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iv)신청인의 품질경쟁력이 낮았다면 조사대상기간 중 매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을 것이나 내수 영업이익률이 '18년 xxx%에서 '21년 xxx%로 하락한 점 등을 볼 때,
- 효성화학(주)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저하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가 덤핑 물품의 수입이 국내 시장가격을 하락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함

## <과도한 설비투자 관련>

○ 신청인은 '19년 판매관리비 상 감가상각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것으로서, 설비투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매년 xxx억원 수준 내외로 지출된바, 이는 생산설비를 신설할 정도의 투자금액은 아니며, 태양광설비, 저탄소냉난방장치 등의 친환경투자와 제조설비 중 일부인 슬리터의 교체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였다고 주장함

<sup>113)</sup> 신청인의 추가 답변서('22.5.27. 제출)

## 3) 조사실 검토

#### <제품경쟁력 저하 관련>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유의미한 수요변화, 제조기술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률이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FITI시험연구원 시험결과에 따르면 덤핑물품과 국내생산품간 물리적특성에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국내산업의 품질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가 소폭 증가(0.7%) 한데 비해 내수 판매가격은 7.0%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수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18년 xxx%에서 '21년 xxx%로 크게 증가\* (19.2%p)한 것은 덤핑수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바,
  - \* (참조) Ⅲ.2.라.4)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표 참조
- 국내산업의 내수 영업이익 악화는 국내 동종물품의 품질 및 원가 등 제품경쟁력 저하보다는 덤핑수입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과도한 설비투자 관련>

- 신청인에 따르면, '18년 공장건물 신축 및 개선(약 xxx억원), '19년 태양 광발전 설비 신설(약 xxx억원), '20년 저탄소 배출 냉난방기 교체(약 xxx억원), '21년 슬리터 교체(약 xxx억원) 등 생산 효율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¹¹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내산업의 투자수익률\*(투자자산총액 대비 내수 영업이익 비율)이 '18년 xxx%, '19년 xxx%, '20년 xxx%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신청인의 설비투자가 과도한 것이고,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가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인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 (참조) III.2.라.7) '투자수익률'

<sup>114)</sup> 본 보고서 '참고3. 국내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참조

#### 바. 기타 요인

○ 위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WTO 반덤핑협정 제3.5조에서 열거한 외국 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상품 생산성 등 사항은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증빙이 충분히 포함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음

#### 사. 소결

- 이상에서 볼 때,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요인의 영향'과 관련 하여, 기타국산 물품, 국내소비의 변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 제품 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설비투자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출실적 등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의견이 상충되는바, 추후 본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료가 추가로 입수되거나 이해관계인들이 추가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3. 인과관계 종합검토

-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은 내수판매량 증가(연평균 7.2%)가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고, 시장점유율은 하락('18년 xxx% → '21년 xxx%) 하였으며,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의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상승 억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덤핑물품의 물량 및 가격 효과에 따라, 국내산업은 연평균 고용인원, 재고 등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된 부문도 있지만, 생산량 및 가동률, 시장점유율 등이 하락 내지 악화되었고, 내수판매량 증가(연평균 7.2%)는 국내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판매가격 대비 제조원가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18년 xxx% → '21년 xxx%) 하면서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이 하락 내지 그 상승이 억제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현금흐름, 자본조달 능력,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이 저해되어 생산성과 성장성이 억제되는 등 덤핑물품의 수입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타국산 물품, 국내소비의 변화,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 제품 경쟁력 저하 및 과도한 설비투자가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의견이 상충되는바, 추후 본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료가 추가로 입수되거나 이해관계인 들이 추가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조사대상기간 중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물량은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고, 그 판매가격도 덤핑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므로 기타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국내소비는 조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2% 증가한 것을 볼 때, 조사

대상기간 중 국내소비의 변화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사대상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기간 중 폴리아미드 레진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소폭 하락(연평균 1.6%)한 것은 원가부담 완화로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이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유의미한 수요 및 제조기술의 변화가 없었고, 내수 영업이익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18년 xxx%, '17년 xxx%, '20년 xxx%)된 점 등을 볼 때, 제품경쟁력 저하가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조사대상기간 중 설비투자는 매년 xxx억원 내외규모이고 투자수익률이 상당한 수준('18년 xxx%, '19년 xxx%, '20년 xxx%)으로 유지된 점 등으로 볼 때, 과도한 설비투자를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출실적이 국내산업 피해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의견이 상충되는바, 추후 본 조사를 통해 이용가능한 자료가 추가로 입수되거나 이해관계인들이 추가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가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V.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 1. 예비긍정 판정 시

가.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건의하는 경우

####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 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 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7.1조

잠정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 (i)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고 동 사실이 공표되고 이해당사자 에게 정보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위한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며;
- (ii) 덤핑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 (iii) 관계당국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고,
-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함

## - 다음 -

# 1) 부과대상물품

○ 정의 : 연신가공된, 두께 25μ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 : HSK 3920.92.0000

## 2)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 및 그 관계사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 및 그 관계사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그 밖의 공급자	5.12%
미그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	24.81%
태국 	그 밖의 공급자	24.81%
인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	46.71%
네시아	그 밖의 공급자	46.71%

##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사유

-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3.4%p)하였음
- 또한, 조사대상기간 중 덤핑물품의 판매가격이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xxx~xxx%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가 판매됨에 따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하락과 가격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중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3.2%p), 내수 매출액(△0.4%p) 등이 감소하였고, 내수 판매량 증가(연평균 7.2%)는 국내 소비 증가(연평균 10.2%)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국내산업의 내수 부문 영업이익률은 '18년 xxx%에서 '21년 xxx%로 급감하는 등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본조사 기간 동안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영업이
   익 악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하지 않는 경우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 예비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건의하지 않음
- 본조사 기간을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지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2. 예비부정 판정 시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및 피해우려가 경미하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함
-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함

## 산업피해조사 경과

- '21. 12. 1. : 신청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제출
- '21. 12. 27. :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의 신청인에 대한 조사신청서 보완 요청(제출기한 : '22.1.7.)
- '22. 1. 7. :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보완자료 제출(조사신청서 접수일\*)
  -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서 보완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 '22. 2. 23. :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개시 결정
- '22. 2. 28. :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2-5호)
- '22. 3. 3. : 조사질의서(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송부(답변기한 : '22.4.11.)
  - '22. 4. 4.: 효성화학(주) 수입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22.4.11. → '22.4.25.)
  - '24. 4. 7.: 신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22.4.11. → '22.4.25.)
  - '22. 4. 11.: (주)크라운화학 수입자 답변서 제출
  - '22. 4. 13.: 수입자 1개사 및 수요자 2개사 답변서 제출
  - '22. 4. 21.: (주)플러스팩 수입자 답변서 제출
  - '22. 4. 25.: 신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및 효성화학(주) 수입자 답변서 제출
- '22. 5. 9.: 예비조사기간 연장(당초: '22.5.27.까지 → 연장: '22.7.27.까지)
- '22. 5. 18.: 국내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 '22. 4. 27.: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안내(공문 발송)
  - '22. 5. 11.: 신청인 및 효성화학(주)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제출
  - '22. 5. 16.: 신청인 이해관계인회의 반박의견 제출
  - '22. 5. 25.: 효성화학(주)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 제출
  - '22. 5. 25.: 신청인 이해관계인회의 후 추가의견 제출
  - '22. 6. 2.: 신청인 수입자측의 추가의견에 대한 반론 제출

## 덤핑조사 경과

- '21. 12. 1.: 신청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제출
- '21. 12. 9.: 공급국 정부에 신청 접수사실 통지
- '21. 12. 27.: 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의 신청인에 대한 조사신청서 보완 요청(제출기한: '22.1.7.)
- '22. 1. 7.: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보완자료 제출(조사신청서 접수일\*)
  -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서 보완자료가 제출된 날을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봄
- '22. 2. 23.: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 개시 결정
- '22. 2. 28.: 조사개시결정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22-5호)
- '22. 2. 28.: 공급국 정부 및 조사대상공급자에 조사개시결정 통지 및 질의서 송부(참여신청기한: '22.3.21. 질의서 답변기한: '22.4.11.)
- '22. 3. 18.: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에이제이피)
- '22. 3. 21.: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접수(더저우동홍, 효성자성)
- '22. 3. 24.: 조사대상공급자 답변기한 연장신청(에이제이피)
- '22. 3. 28.: 조사대상공급자(효성 자싱) 물품통제코드 관련 의견제출
- '22. 3. 30.: 물품통제코드 관련 접수된 의견을 이해관계인에 회람
- '22. 4. 1.: 물품통제코드 관련 의견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22. 4. 4.: 조사대상공급자 답변기한 연장신청(더저우동홍, 효성자싱)
- '22. 4. 8.: 조사대상공급자 답변기한 연장 통보('22.4.11.→'22.4.25. 2주 연장)
- '22. 4. 22.: 효성자싱에 물품통제코드 관련 조사실 검토 결과 송부

- '22. 4. 25.: 조사대상공급자 답변서 접수(더저우동홍, 효성자싱, 에이제이피)
- '22. 6. 17.: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송부(에이제이피, 답변기한: 6.24.)
- '22. 6. 22.: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송부(동홍, 답변기한: 6.28.)
- '22. 6. 24.: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송부(효성자싱, 답변기한: 6.30.)
- '22. 6. 24.: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에이제이피)
- '22. 6. 28.: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동홍)
- '22. 6. 30.: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효성자싱)
- '22. 6. 30.: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송부(에이제이피, 답변기한: 7.4.)
- '22. 7. 4.: 덤핑조사 보충질의서 답변서 제출(에이제이피)
- '22. 7. 13. : 예비덤핑률 산정 관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 국내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현황

##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설비투자 현황115)

(단위: 백만원)

연도	투자구분	설비투자 내역	투자금액	투자효과
	건물	공장 건물의 신축 및 개선투자		생산환경 개선
2018	구축물	공장 바닥재 개선공사		생산환경 개선
	기계장치	유압변압기 신설		생산효율성 증대
기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신설116)		지속가능경영(ESG) 투자
2019	공구와기구	보빈처리용 대차117) 제작		생산효율성 증대
2020	기계장치	저탄소 배출 냉난방기 교체		지속가능경영(ESG) 투자
2020	구축물	출하상차장 케노피설치공사		생산효율성 증대
2021	기계장치	슬리터118) 교체		생산효율성 증대
2021	공구와기구	슬리터 Contact Roll <sup>119)</sup>		생산효율성 증대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

<sup>115)</sup> 신청인의 추가답변서('22.5.23. 제출)

<sup>116)</sup> 태양광 발전으로 공장 운영 및 잔여 전력 외부에 공급함으로써 기존의 탄소 연료를 통한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킨 친환경적인 경영 정책

<sup>117)</sup> 보빈처리용 대차 : 보빈은 필름 완성 후 권취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름을 감을 스틸 롤을 의미하며, 보빈잔량처리용 대차는 보빈에 남은 필름(잔량필름)을 오프라인 재생처리하기 위해 보빈을 올려놓고 풀어주는 설비임

<sup>118)</sup> 슬리터 : 슬리터는 점보 롤 필름을(폭 4,190mm x 길이 30,000m) 출고 사양에 맞게 소폭 필름으로 길이를 조정하여 절단(4~7컷)하는 설비임

<sup>119)</sup> 슬리터 Contact Roll : 점보 롤 필름을 사양에 맞게 소폭으로 절단할 때 제품의 구김 등의 방지하기 위해서 필름의 팽팽함을 유지시켜 주는 롤임

##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120)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개발 목적	연구개발 투자 내역	투자금액	투자효과
2018	첨가제(AB제 <sup>121)</sup> ) 개발			제품 불량률 감소
2019	BOPA 내열성 강화 필름 개발			판매증대
2020	온습도 변화에 따른 에지업122) 불량개선			제품 불량률 감소
	인쇄망점 불량 <sup>123)</sup> 개선			판매증대
2021	탄화물 불량 발생124) 원인 및 재발방지			제품 불량률 감소
	신규 슬리터 적용 조건 설정 및 안정화			생산성 향상

<sup>\*</sup>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및 추가 답변서

<sup>120)</sup> 신청인의 추가 답변서('22.5.23. 제출)

<sup>121)</sup> AB제 : Anti Blocking의 약자로서, AB제는 아래 설명하는 블로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첨가제임

<sup>122)</sup> 에지업(EDGE UP) : 슬리터공정에서 제품을 절단할 때 절단된 제품의 끝부분이 올라오는 현상을 말함

<sup>123)</sup> 인쇄망점 불량 : 필름 표면에 인쇄했을 때, 부분적으로 인쇄잉크 일부분이 필름에 깨끗하게 올라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탈락되는 현상(인쇄 용액이 부분적으로 필름에 접착되지 않아 인쇄가 고르게 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함)을 말함

<sup>124)</sup> 폴리머 필터 및 탄화물 불량 : 필름 생산공정은 폴리아미드 수지에 열을 가하고 용융 및 압출하는 과정에서 이물과 열을 받아 발생한 수지 탄화물 등을 걸러내는 설비를 폴리머 필터라고 하며, 탄화물 불량은 폴리머 필터를 통과한 이물이 필름 표면에서 발견되는 불량임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조사 관련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의견

"비공개"

# < 붙임자료 >

1.	조사개시	공고	문	•••••	126	ó
2.	국내산업	피해 여	이해관계인	회의	개요129	)
3.	국내산업	피해 여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제출자료130	)
4.	국내산업	피해 여	이해관계인	회의	후 추가 제출자료150	)

## 붙임 1

## 조사개시 공고문

#### ●무역위원회공고 제2022-5호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 가.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 나. 신청일자: 2022년 1월 7일
- 2. 조사개시 결정내용
- 가. 조사대상물품
- o 품명: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조사범위: 연신가공된, 두께 25µm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단, 금속 등의 중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 : HSK 3920.92.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계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평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나. 조사대상자
-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ㅇ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 (인도네시아) PT. KOLON INA
-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계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물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 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 다. 조사대상기간

- (1) 덤핑사실조사: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12월)
  -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4년)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 까지 연장할수 있음

#### 3. 향후 조사계획

#### 가. 조사일정

- (1) 조사개시일 : 관보계재일
-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 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된 수 있음

#### 나. 조사절차

- (1) 질의서조사
-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 (2) 현지조사
-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 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 시할 계획임
-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4) 이해관계인 회의: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 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과해 부문은 산업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의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회해 유무를 결정함
-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 (우편변호	HARRING MADERIA STATE OF THE PROPERTY OF THE PARTY OF THE
- 전 화	044-203-5964	044-203-5872
- FAX	044-203-4815	044-203-481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 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 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t)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 붙임 2

#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개요

## □ 회의 개요

○ **개최목적**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조사의 국내산업피해 유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주장사항 논의

○ 일시 : 2022.5.18.(수) 14:00~15: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1동 409호, 무역위원회 심결정실)

○ **참석자** : (조사실)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회의주재), 담당 조사관 (이해관계인) 신청인측 4명, 피신청인측 3명 등 총 7명

○ 진행 순서(안) \* 실제 참석인원 등에 따라 변경가능

연번	시 간	발언내용	발언자	
1	14:00~14:05(05')	인사말	산업피해조사과장	
2	14:05~14:10(05')	조사경과 및 회의진행 안내	담당조사관	
3	14:10~14:30 <b>(20')</b>	신청인측 발언	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	
4	14:30~14:50 <b>(20')</b>	피신청인측 발언 (수입자, 수출자 포함)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	
5	14:50~15:25 <b>(35')</b>	신청인측 및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간 질의 답변	신청인측·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또는 대리인)	
6	15:25~15:30(05')	맺음말	산업피해조사과장	

붙임 3

#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제출자료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조사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자 회의

> 국내생산자 발언요지 (공개본)

> > 2022. 5. 18

국내생산자: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본 발언요지에는 본인의 제조원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비밀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생산자(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발언요지

2022. 5. 18

#### 1.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의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물품은 대상기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조사대상물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자는 이러한 저가로 수입되는 조사대상물품과의 경쟁을 위하여 판매가격을 수입산 물품의 가격에 맞춰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 원재료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되는 판매가격이 형성되었다면, 조사대상물품과 국 내생산품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수 입품의 가격은 대상기간동안 국내생산품의 가격보다 낮았습니다.
- 이는 수입품의 공급자가 국내생산품의 기존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구매자
   에게 제안하는 방식의 노골적인 저가 판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대상기간 동안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국내 생산자의 영업이익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톤, 천USD, 천USD/톤, 천원, %)

	그 님	/101 f	′19ર	1	′20 ર	1	′21년	
구분		′18년		증률		증률		증률
	수입중량	5,825.80	7,826.40	34%	7,799.30	△0%	8,130.90	4%
   중국	수입금액(천\$)	23,360.00	25,729.00	10%	19,978.00	△22%	27,288.00	37%
0 4	원화수입금액(천원)	25,709,549	30,002,844	17%	23,574,240	△21%	31,234,118	32%
	원화수입가격(원/KG)	4,413	3,834	△13%	3,023	△21%	3,841	27%
	수입중량	4.20	185.20	4310%	1,091.40	489%	1,017.30	△7%
   태국	수입금액(천\$)	18.00	468.00	2500%	2,631.00	462%	3,050.00	16%
41-4	원화수입금액(천원)	19,810	545,739	2655%	3,104,606	469%	3,491,061	12%
	원화수입가격(원/KG)	4,717	2,947	△38%	2,845	△3%	3,432	21%
	수입중량	1,277	822	△36%	910	11%	903	△1%
인도	수입금액(천\$)	4,741	2,805	△41%	2,453	△13%	2,941	20%
네시아	원화수입금액(천원)	5,217,850	3,270,939	△37%	2,894,565	△12%	3,366,298	16%
	원화수입가격(원/KG)	4,086	3,980	△3%	3,180	△20%	3,728	17%
	수입중량	7,107	8,833	24%	9,801	11%	10,051	3%
합계	수입금액(천\$)	28,119	29,002	3%	25,062	△14%	33,279	33%
1 11 11	원화수입금액(천원)	30,947,209	33,819,522	9%	29,573,411	△13%	38,091,476	29%
	원화수입가격(원/KG)	4,354	3,829	△12%	3,017	△21%	3,790	26%
평	국내생산품 균판매가격(원)	[6,000]	[5,106]	△15%	[4,336]	△15%	[4,821]	11%
	가격차이	△[**]%	△[**]%	3%p	△[**]%	△6%p	△[**]%	11%p
	평균환율	1,100.58	1,166.11	6%	1,180.01	1%	1,144.61	△3%

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생산자 경영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2.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은 유사합니다.
  - 수입자는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이 국내생산품과 유사하거나 우수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수요자는 양 제품간의 품질은 유사하나 동시연신의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컬방지효과가 축차연신의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동시연신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중단되어, 효성이 국내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내생산자는 일부 수입자측 답변서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조사대상물품과 국 내생산품은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폴리아미드 필름의 컬방지 기능이 높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삼방봉투" 등의 포장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포장봉투에 제조에 있어서 컬방지 기능은 완제품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컬방지 기능이 동시연신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만 보유한 고유의 특성이 아닙니다. 축차연신 방식이더라도 생산된 제품의 중앙(Center)부분에서 생산된 제품과 튜불러(Tubuler)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에서도 그 기능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더욱이, 최근 포장봉투 제작에 폴리아미드 필름과 함께 사용되는 LLDPE의 제품 안정성이 향상되어 폴리아미드 필름에서 약간의 컬이 발생하더라도 합지된 LLDPE가 컬을 교정하는 역활을 하여, 최종적으로 완제품에서는 컬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동시연신설비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되지 않는다면, 효성의 대전공장(동시연신, 튜불러)의 제품이 국내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의견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6개의 생산라인이 있으며, 그중 효성화학(주)의 1개라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개라인이 튜블러 방식의 동시연신설비이며, 효성화학(주)의 1개라인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2개라인이 축차연신설비입니다. 따라서, 동시연신방식의 물품을 선호한다면, 효성화학(주) 뿐만 아니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에서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약하면, 컬방지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구매는 국내생산품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며, 제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폴리아미드의 컬방지 기능이 낮더라도 LLDPE의 소재의 안정화로 인하여 충분히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컬방지 기능 만을 이유로 하여 필수적으로 수입품을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3.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야 합니다.

- 일부 수입자 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르며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의 국내생산품의 품질보다 뛰어나고, 일부 최종수요자는 이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더 많은 양의 제품을 공급하는 효성 등의 다른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는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간에 유의한 품질차이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차이 있다는 의견은 일부 수요자 또는 수입자의 개별 사업에 서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만약 품질이 더 우수하고, 고객의 선호가 높다고 가정하면, 조사대상물 품은 국내생산품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일 것이며, 국내생산품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상황 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1. 가격비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품은 높은 품질의 제품은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의 가격의 하락 압박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 4. 국내시장의 공급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수입품은 수출국 내의 수요 및 가격 등의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고 있어 공급안정성이 낮습니다. 일례로 최근 중국 상하이 항구 봉쇄에 따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중단되었고, 원재자를 수입하지 못한 수요자는 긴급하게 국내생산자에게 제품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입품의 불안정적인 공급은 국내수요자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자의 사업의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국내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
   모두 예상가능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게 되어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 또한, 폴리아미드 필름의 수입이 감소하면, 국내시장은 공급부족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자가 실무상으로 파악한 국내 월 수요량은 약 [\*\*\*\*\*톤 ~ \*\*\*\*\*\*\*톤]입니다. 이에 반해 효성과 코오롱을 포함한 국내생산자의 월 생산량은 [\*\*\*\*\*톤 ~ \*\*\*\*\*\*\*톤]입니다. 수입품의 감소 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국내생산품은 안 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합입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따라 불공정한 수입가격을 보완
 하여 국내시장에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조사대상물

공개용

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많은 수입자 또는 수요자가 덤핑방지관세가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 등이 반덤핑조치로 인하여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그간 덤핑수입이라는 불공정한 행위를 통하여 취했던 이익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해 없어져 수입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해 덤핑수입으로 인한 불공정한 이익이 감소할 것이며, 국내시장은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전환 될 것입니다.

#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및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 요지 효성화학 주식회사

#### I. 들어가며

당사, 효성화학㈜는 조사대상물품인 폴리아미드 필름의 국내 최대 생산자로서 본 덤핑방지관세 조사개시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의견서를 지난 2021년 1월 7일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역위원회에서는 본 덤핑방지관세 조사를 조사개시 하였으며, 이에 이해관계인 회의를 통하여 향후 제기할 이슈와 산업피해조사팀에서 조사과정에서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을 제기하는 바 입니다.

#### II. 효성화학 의견

#### 1.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 충족 여부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생산능력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장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며 "Wood Mackenzie Chemical" Report (2021년)에 따르면 효성화학의 국내생산능력은 \*\*\*\*톤/년으로 전체 생산량의 \*\*%인 반면 신청인은 \*\*\*\*톤/년으로 \*\*%에 불과합니다.

신청인은 조사 신청서에 국내생산자인 효성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생산능력과 가동율로 생산량을 추정하였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생산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톤 수준인 것으로알고 있으며, 효성화학의 2020년 생산량 \*\*\*\*톤, 2021년 상반기 \*\*\*\*톤과 비추어 보아

도 시장자료와 근접한 수준이므로 본 시장자료로 생산점유율을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 수준의 생산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국내산업 의 대표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생산자	생산능력(톤/년)	%
효성화학	****	**%
제이케이머티리얼즈	****	**%
코오롱인더스트리	****	**%
합계	****	100%

비공개 자료

["Wood Mackenzie Chemical" Report (2021년)]

효성화학은 "국내생산자 질의서 및 작성양식"에 대한 회신으로 2021년 12월 17일 산업피해조사팀에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생산량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조사실에서는 동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 및 다른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성화학이 국내생산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효성화학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였고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조건 국내산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무역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보더라도 공급자와 특수관계인이라고 무조건 국내산업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으며, 국내산업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59조 4항에 따르면,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성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를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경우, 폴리아미드 필름 국내 생산량의 약 \*\*%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신청인의 경영실적만으로 산업피해 여부 및 덤핑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바, 이는 정확하게 국내산업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 국내 판매량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효성화학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내생산품의 국내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신청인은 효성화학보다 많은 물량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효성화학은 국내에서 생산한 폴리아미드 필름의 내수판매 실적을 2021년

12월 17일 제출한 바 있으니, 조사실에서 양사의 판매량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화학의 2020년 내수판매량은 \*\*\*\* 톤 이며, 2021년 상반기 판매량은 \*\*\*\* 톤 입니다.

하지만, 국내판매량은 국내산업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국내생산량을 기준으로 대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판매량은 조사개시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신청물품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법한 조사개시인지 여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덤핑방지 관세 신청에 대한 조사개시를 위해서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거 자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WTO 반덤핑 협정 제 5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르면 제소적격과 별도로 신청 자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59조에서도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1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기 위한 조사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5.2 제1항의 신청은 (a)덤핑, (b)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c)덤핑수입품과주장된피해간의인과관계에대한증거를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WTO 반덤핑 협정 제5조 조사개시 및 후속조사]

신청인도 효성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생산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사가 신청인과 함께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입산 물품을 제외한 국내산 물품의 생산량, 판매량, 손익 등 주요 경영지표를 반영하여 산업피해 지표로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개시를 검토함에 있어 효성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국내생산품을 기준으로 한 산업피해 지표를 합산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인은 조사개시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줘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물품의 전체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단가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으며, 2021년 상반기는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하여일시적인 영업이익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인 영업이익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은 효성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신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지표 및 자료를 요청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며, 효성화학은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효성화학을 포함한 주요한 국내생산자를 국내산업으로 포함하여, 국내시장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산업피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는 "동종물품의 국내 생산 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반덤핑 조사실무상으로는 전체 국내 생산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거나 해외수출자를 샘플링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기준 (생산량 상위 60% 등)을 충족하는 생산자에게 질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효성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주요생산자의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법 규정과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신청인보다 생산량이 많은 국내생산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4.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시장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2020. 7. 1. ~ 2021. 6. 30.) 은 제소자가 덤핑방지관세 신청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공급부족인 국내시장에서 내수판매량을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급능력에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주변국가로부터 수입이 일정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악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당국은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직전 6개월 이전에 수입한 수량과 조사대상기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수입량의 변동, 원재료 가격대비 수입단가의 변동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5. 산업피해지표의 부재

(1) 신청인의 국내 출하량: 신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조사대상물품의 판매량 감소는 신청인의 수출판매량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된 것이 분명합니다.

#### 2 판매 및 재고 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514		:20 H	8	,184	*18vd		77.9
중감됨		중감물		중감물		19/5		구장
99	1,852	△13%	1,702	96%	1,957	1,000	32(g)	기초제.
09	864	△5%	864	△9%	912	1,000	}(b)	생산병
49	928	△7%	890	△4%	956	1,000	물량	A 24 AI
229	7,879	△20%	6,476	△19%	8,081	10,000	금액	충출하 (g=c+d
179	849	△14%	728	△15%	845	1,000	단가	+e+f)
199	1,230	△1%	1,032	4%	1,044	1,000	풍량	국내출
331	9,886	△16%	7,460	△11%	8,885	10,000	금액	하 (판매)(
119	804	△15%	723	△15%	851	1,000	단가	c)
△189	555	△18%	673	△18%	816	1,000	문량	
△09	5.079	△27%	5.102	△30%	6,958	10,000	금액	个合(d)
219	916	△11%	758	△15%	853	1,000	단가	
09	1,000	0%	1,000	0%	1,000	1,000	문장	내부대 제(e)
△239	1,047	4%	1,365	31%	1,309	1,000	문량	타계정 대체(f)
△449	529	9%	946	△13%	870	1,000	!(h=a+	기말재고 b-g

출처 : 신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 (2) 영업이익의 악화

#### <내수>

(단위: 천원, %)

구분	43014	*19	.184		4	·21년	
	*18V		중간불		중간분		중감품
매충역(A)	10,000	8,885	△11%	7,460	△16%	9,886	33%
매출원가(B)	10,000	9,470	△5%	7,982	△16%	11,589	45%
매충총이익(C+A-B)	10,000	7,127	△29%	5,891	△17%	4,767	△19%
관매관리비(D)	10,000	11,194	12%	11,707	5%	13,298	14%
영업이익(E+C-D)	10,000	5,396	△46%	3,415	△37%	1,135	△67%
영업이익률(E/A)	****	*****	△7%p	***%	∆3%p	****	∆6%p

#### < 宁登>

(단위: 천원, %)

구분	11014	*19	.19/4		낸	*21·년	
	.18/4		중감찰		중강물		중감물
대충역(A)	10,000	6,958	△30%	5.102	△27%	5,079	△0%
매출원가(B)	10,000	7,416	△26%	5,459	△26%	5,954	9%
매출총이익(C+A-B)	10,000	5.581	△44%	4.029	△28%	2.449	△39%
관매관리비(D)	10,000	8,764	△12%	8,039	△8%	7,632	△5%
영입이익(E+C-D)	10,000	3,489	△65%	1,392	△60%	(958)	△169%
영업이익롼(E/A)	***%	***%	△8%p	****	△3%p	***%	∆7%p

## 나.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 원/kg. %)

子甚	181	*191		*20	*2014		*211년	
TE	10/2		중감품		중감물		중감품	
재료비(A)	10,000	8,369	△16%	6,779	△19%	9,780	44%	
노무비(B)	10,000	10,947	9%	11,377	4%	11,722	3%	
정비(C)	10,000	10,330	3%	10,137	△2%	11,622	15%	
총제조비용(A+B+C)	10.000	8,867	A11%	7,645	△14%	10,213	34%	

[출처 : 신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내수시장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는 원재료비하락에 따른 매출원가 감소보다 판매단가의 감소가 큰 것이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 단가 변동 추정자료와 같이 특히, 21년에는 제조원가가 34% 상승하였지만, 신청인의 판매단가는 1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제조원가의 상승을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며, 오히려 수출판매에서는 단가를 20% 증가하여, 내수 시장보다 제조원가 상승을 가격에 더 많이 반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내수)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매출수량	1,000	1,044	4.4%	1,032	-1.1%	1,230	<b>19.2</b> %
매출액	10,000	8,885	-11.2%	7,460	-16.0%	9,886	32.5%
단가변동	10.000	8.511	-14.9%	7.229	-15.1%	8.037	<b>11.2</b> %
총제조비용	10,000	8,867	-11.3%	7,645	-13.8%	10,213	33.6%

구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수출)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매출수량	1,000	816	-18.4%	673	-17.5%	555	-17.5%
매출액	10,000	6,958	-30.4%	5,102	-26.7%	5,079	-0.5%
단가변동	10.000	8.527	-14.7%	7.581	-11.1%	9.151	20.7%
총제조비 용	10,000	8,867	-11.3%	7,645	-13.8%	10,213	33.6%

또한, 내수시장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판관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서 판관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관비를 매출액비율로 안분하는 상황에서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더러, 판관비의 자의적인 배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3) 판매 및 관리비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것 또한 신청인의 영업이익 축소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판관비 내역을 검토하면, 감가상각비가 19년 617% 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제시한 설비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설비투자라고 한다면, 모두 제조원가화 되어야 하며, 판관비로 처리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없을 것입니다. 조사실은 판관비 중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조사대상물품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판관비 상의 감가상각비는 현금흐름표의 감가상각비 변동과도 불일치합니다.

#### □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관리비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18년	19	M	.50	M	*21	M
Te	10/2		중감률		중감물		중감률
급여	10,000	9,435	△6%	11,238	19%	8,026	△29%
퇴직급여	10,000	5,887	△41%	6,562	11%	3,224	△51%
복리후생비	10,000	8,980	△10%	11,317	26%	11,977	6%
여비교통비	10,000	13,722	37%	3,593	△74%	2,645	△26%
통신비	10,000	10,003	0%	8,821	△12%	10,006	13%
세금과공과	10,000	11,059	11%	13,597	23%	10,065	△26%
임차료	10,000	10,126	1%	10,486	4%	8,902	△15%
수선비	10,000	10,000	0%	10,000	0%		△100%
감가상각비	10,000	71,658	617%	76,966	7%	76,231	△1%
보험료	10,000	14,262	43%	14,933	5%	8,133	△46%
접대비	10,000	10,006	0%	11,182	12%	7,480	△33%
소모품비	10,000	1,743	△83%	6,476	272%	6,422	△1%
도서인쇄비	10,000	14,291	43%	14,792	4%	533	△96%
교육훈련비	10,000	828	△92%	1,256	52%	190	△85%
운반비	10,000	9,821	△2%	9,752	△1%	16,882	73%
지급수수료	10,000	7,855	△21%	6,902	△12%	7,098	3%
광고선전비	10,000	10,000	0%	10,000	0%	10,000	0%
차량유지비	10,000	7,755	△22%	5,985	△23%	7,945	33%
대손상각비	10,000	46,936	369%	25,234	△46%	13,191	△48%
경상연구개발비	10,000	7,775	△22%	6,861	△12%	8,228	20%
무형자산상각비	10,000	172	△98%	-	△100%	0	
함계	10,000	10,009	0%	9,918	△1%	10,535	6%

#### (4) 설비투자

신청인은 19년 대규모 설비투자가 있었다고 제출하였지만, 생산능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산능력의 변동이 없는 대규모 수익적 지출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조사대상물품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장상황을 잘못 예측하고, 무분별한 설비투자로 인하여 손익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 ㅇ 귀사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현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단위: 천원, %)

77.14	41014	.19	VI.	*20	d.	·21년	
구분	.184		중감물		중간器		중감품
설비투자	10,000	62	△99%	115	86%	82	△29%
건물	10,000	=	△100%	=			-
공구와기구	10,000	10,000	0%	-	△100%	-	
구축물	10,000		△100%	-	-	-	-
기계장치	10,000	371,003	3610%	170,105	△54%	258,462	52%
연구개발	10,000	7,775	△22%	6,861	△12%	8,228	20%

#### (5) 고용 및 임금

생산량은 18년부터 21년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평균 고용인원(생산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방만한 고용관리가 손익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ㅇ 국내동종물품에 관한 고용 및 임금현황

(단위: 천원, 명, 천원/명, %)

	н	11014	*19	d	*201	d	*21	el .
7	분	·18년		중감률		중감률		중감율
	생산직	10,000	10,182	2%	10,583	4%	10,627	.0%
총임금	사무직	10,000	7,533	△25%	6,315	△16%	8,244	31%
	합계	10,000	9,372	△6%	9,277	△1%	9,898	7%
연평균	생산격	100	100	0%	105	5%	107	2%
고용인	사무격	100	79	△21%	72	△9%	105	46%
원	함계	100	95	△5%	97	2%	107	10%
a colorinal	생산격	1,000	1.018	2%	1,009	△1%	990	△2%
1인당평 균임금	사무직	1,000	954	△5%	880	△8%	789	△10%
	함계	1,000	984	△2%	952	△3%	928	△3%

#### <생산현황>

(단위: 본, %)

구분	11014	19∀∃		*20	년	'21년	
	*18년		중감물		중감률		충감률
생산능력(A)	1,000	1,000	0%	1,000	0%	1,000	0.0%
생산량(B=C+D)	1,000	912	△9%	864	△5%	864	0.1%
제품(C)	1,000	912	△9%	864	△5%	864	0.1%
자가소비(D)			-		=		-
가동률(=B/A)	****	- 宋宗宗宗	△7%p	并未未来	△4%p	***	0%p

#### 6. 인과관계의 부재

먼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의 변동은 주요원재료인 폴리아미드 칩(Nylon Chip)의 국제시장가격 변동에 동일한 추세에 있으며, 국내시장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WTO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의하면,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하며, 조사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수량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청인의 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내수, 수출시장 판매량 추이를 분석하면, 내수 판매량이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추정컨데,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피해(신청인의 경영지표 중 내수판매에서의 영업이익의 악화)는 덤핑수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i) 제품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원재료가격 변동을 충분히 판매가격에 전가 시키지 못한 점 ii) 수출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 및 이로 인한 고정비의 증가 iii)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III. 결론

국내산업으로서의 대표성문제와 더불어,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에 불과한 신청인 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 더욱이 신청인의 경영지표상으로 내수 판매물량이 증가하는 등, 산업피해도 없을 뿐더러, 덤핑조사대상물품과 인과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향후 의견서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주장을 밝힐 것이며, 본 조사는 예비판정에서 종료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이상 -

## 국내생산자 의견서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2022. 5. 18)의 발언요지와 관련하여

2022. 5. 16

효성화학(주)(이하 "피신청인")이 2022. 5. 18에 개최되는 폴리아미드 필름의 산업 피해 이해관계인회의의 발언요지에 대한,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이하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 <u>기.</u> <u>피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서 2022. 3. 9에 조사개시결정한 폴리아미드 필름의</u> <u>조사에 대해 국내산업의 대표성, 인관관계의 판단에 있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u>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① 피신청인은 조사개시를 위한 조사에서 주장한 사항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기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사개시가 결정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조사개시검토 보고서의 오류나 추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②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억지주장은 본 조사에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무역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 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u>나.</u> <u>피신청인은 국내산업피해를 판단에 있어 자사의 산업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u>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 ① 피신청인은 자신의 산업지표가 중요하며, 산업피해를 판정하기 위한 정보로 포함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대상물품의 최대 수입자로서 자신의 산업지표가 수입품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 등 산업지표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② 또한, 피신청인이 국내산업피해조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덤핑조사답변서와 수입자 답변서 제출시 함께 국내생산자답변서도 제출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국내산업의 일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피신청인은 의무적 답변자가 아니라도 법정제출기한 이내에 국내생산자자답변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생산자 질의서 등의 답변시 필요사항은

무역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접근할 수 있으며, 상세한 질의내용 및 답변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의 제출, 제출에 대한 의사표시 등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무역위원회에 추가적인 답변 기회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④ 하지만 본 의견서를 제출한 시점은 대부분의 이해관계인들이 관련 답변서 제출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없는 피신청인에게 추가의 정보제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⑤ 더욱이, 무역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산업피해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는 것은 피신청인을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국내생산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u>다.</u> <u>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량은 증가했지만, 제품경쟁력이 낮아 판매가격을 인상</u> 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다소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① 피신청인이 산업의 지표를 판단함에 있어, 자신이 유리한 부분인 수량의 증가는 수입품에 따른 산업피해의 고려요소로 판단하고, 불리한 부분인 시장가격의 하락 은 제품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처럼 산업피해를 해석하여 편의적인 주장 을 하고 있습니다.
  - ② 피신청인의 경우 수입품을 국내생산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어 수입품이 저가로 판매되더라도 국내생산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할 여지가 국내생산자에 비하여 현저 히 낮아 이러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입품의 저가판 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산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며, 철저한 수입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 ③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제품의 품질이 낮다면, 판매가격의 변동보다 우 선하여 판매량이 감소했을 것이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 라 조사대상 전기간 동안 낮은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 만 신청인의 산업지표는 대상기간 동안 판매가격의 하락과 영업이익의 감소를 보

이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제품 경쟁력이 낮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창출되던 영업이익이 저가수입품으로 인한 판매가격의 인하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라. <u>피신청인은 판매관리비의 배부절차,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현금흐름표상의 감가상각비의 불일치를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의 증가, 설비투자의 증가 및 고용인원의 증가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경영이 산업피해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u>
  - ① 판매관리비의 구분은 실제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귀속에 따라 분류하고, 공통비용의 성격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매출액 등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매출액비율에 따라 배부되지 않았다고하여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용의 귀속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보다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와 현금흐름표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일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②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 설비투자, 고용인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비공개정보로서 본 의견서에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신청인의 경영방식에 대한 평가할 만큼의 중요성이 높은 항목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항은 산업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역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u>마.</u> <u>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판매수량의 증가가 영업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판매가 격으로 원가보상을 받지 못했고, 수출량이 감소해서 고정비가 증가했다는 등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자의적으로 추정한 근거를 기준으로 덤핑조사의 인과관계 부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u>
- ① 인과관계 부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나름대로 해석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② 신청인이 파악한 피신청인의 주장 근거는 (1) 판매수량이 증가되었으나 영업이 이익이 감소했다, (2) 판매가격이 원가를 적정하게 보상받지 못하였다. (3) 수출의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다, (4)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였다가 인과관계 부재의 주요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③ 판매수량이 증가했음에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저가수입품의 영향으로 판매가격이 원가보상을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 ④ 수출의 감소가 생산량의 감소를 이끌고 이로 인한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서 발생하는 고정비 자체가 크지 않아, 생산량이 소폭감소하더라도 고정비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정비 부담의 증가 보다는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제조원가의 상승에 맞춰 적정한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필요한 투자가 영업이익의 감소원인이라고 하나, 신청 인은 중소기업으로서 과도하게 투자할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고 불필요한 투자를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투자한 항목은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바. 결론

- ① 피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서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조사절차의 미흡함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내생산자로서의 답변제출 등의 적극적인 행위 없이 자신이 국내생산자에 해당한다고 반복적인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정보제출의 기회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의적인 추정과 판단으로 산업피해지표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억지 결론을 도출하여 산업피해조사에 혼란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불공정한 조사, 근거가 미흡한 주장 등을 산업피해조사에서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이를 근거로 예비조사에서 조사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또는 상식적인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게 폴리아미드 시장이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근거없은 피신청인의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국내산업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산업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붙임 4

# 국내산업피해 이해관계인 회의 후 추가 제출자료

### 국내생산자 의견서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2022. 5. 18) 이후 의견서 제출

2022. 5. 25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이하 "국내생산자")는 2022. 5. 18에 개최된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피해 이해관계인회의와 관련, 회의시 논의되었던 최근 효성화학 ㈜(이하 "효성화학")이 중국에 증설한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제출드립니다.

효성화학은 2022. 1. 4에 지분율 100% 자회사인 Hyosung Film(Quzhou) Co. Ltd. 를 설립하고 2022. 5. 17 동 자회사에 "중국 나일론 필름 증설계획에 따른 추가 출자"를 목적으로 25,632 백만원(20백만 US\$)을 추가로 출자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효성화학의 분기보고서(2022. 3. 31) 중 종속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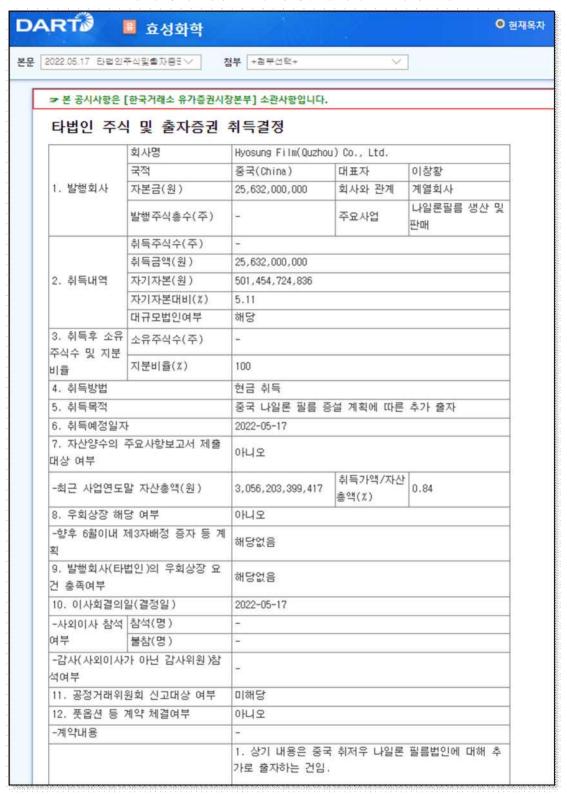
#### 가. 종속기업 현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당분기말 지분율(%)	전기말 지분율(%)	설립국가	결산월	업종
Hyosung Vina Chemicals Co., Ltd.	100%	100%	베트남	12월	PP/DH생산업
Hyosung Film(Quzhou) Co., Ltd.(주1)	100%	-	중국	12월	나일론필름생산업

(주1) 회사는 2022년 1월 14일 신규설립된 100%자회사인 Hyosung Film(Quzhou) Co., Ltd.에 대해 23,764백만원(USD 20백만)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습니다.

〈효성화학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효성화학이 100% 소유의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기존

의 조사대상물품을 생산하는 관계사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에 추가로 중국에 공장을 증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규 투자는 중국에서의 생산능력의 급격히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내생산자는 신규로 증설된 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하여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국내생산자는 초과 생산된 조사대상물품은 국내로 수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는 효성화학은 장기간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을 동시에 판매에 따른높은 시장점유율, 국내의 대표 소재 기업이라는 기업브랜드 등의 국내 사업기반으로인해,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내의 증설은 국내산업의 입장에서는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같이, 폴리아미드 필름의 국내산업은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일부 국내생산자조차 저가 수입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지 마저도 국내가 아닌 피조사국에 이뤄져 국내산업의 발전이 아닌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산업 상황으로 인해 불공정한 덤핑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국내산업이 불공정한 경쟁상황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국내생산자로서 무역위원회에 이러한 국내산업의 현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본 사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으로 국내산업이 공정화 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끝.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조사 국내산업피해이해관계자 회의 발언요지

(이해관계인 회의시 추가 발언에 대한 서면 제출)

# 1.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신청 인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JK머티리얼즈)은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비교기준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상의 판관비 (ex. 운임비)와 이윤 등이 추가되어 수입단가와 실제 대리점, End-User에 판매되는 유통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최종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있으며, 실제로 고객이 느끼는 체감 가격과도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이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입산의 지속적인 판매가격 하락, 즉, 19~20년의 가격하락은 <원 재료 가격동향>에서 확인 가능 하듯이, 원가의 하락에 기인된 것입니다. 21년에는 신청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원재료 값이 상승하여 수입산제품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즉,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과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하락에 대한 인과관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하락은 원재료 가격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위: 톤, 천 USD, 천 USD/톤, 천원, %)

		rea let	'19 <del>년</del>	1	′20 년	1	'21 년	1
	구분	'18 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입중량	5,825.80	7,826.40	34%	7,799.30	△0%	8,130.90	4%
× ¬	수입금액(천\$)	23,360.00	25,729.00	10%	19,978.00	△22%	27,288.00	37%
중국	원화수입금액(천원)	25,709,549	30,002,844	17%	23,574,240	△21%	31,234,118	32%
	원화수입가격(원/KG)	4,413	3,834	△13%	3,023	△21%	3,841	27%
	수입중량	4.20	185.20	4310%	1,091.40	489%	1,017.30	△7%
CH CO	수입금액(천\$)	18.00	468.00	2500%	2,631.00	462%	3,050.00	16%
태국	원화수입금액(천원)	19,810	545,739	2655%	3,104,606	469%	3,491,061	12%
	원화수입가격(원/KG)	4,717	2,947	△38%	2,845	△3%	3,432	21%

(단위: 톤, 천 USD, 천 USD/톤, 천원, %)

7.8		'18 년	′19 <del>L</del>	1	'20 H	1	′21 <del>[</del>	1
	구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입중량	1,277	822	△36%	910	11%	903	△1%
인도	수입금액(천\$)	4,741	2,805	△41%	2,453	△13%	2,941	20%
네시아	원화수입금액(천원)	5,217,850	3,270,939	△37%	2,894,565	△12%	3,366,298	16%
	원화수입가격(원/KG)	4,086	3,980	△3%	3,180	△20%	3,728	17%
	수입중량	7,107	8,833	24%	9,801	11%	10,051	3%
÷L게	수입금액(천\$)	28,119	29,002	3%	25,062	△14%	33,279	33%
합계	원화수입금액(천원)	30,947,209	33,819,522	9%	29,573,411	△13%	38,091,476	29%
	원화수입가격(원/KG)	4,354	3,829	△12%	3,017	△21%	3,790	26%
국내생신	산품 평균판매가격(원)	[6,000]	[5,106]	△15%	[4,336]	△15%	[4,821]	11%
	가격차이	△[**]%	△[**]%	3%p	△[**]%	△6%p	△[**]%	11%p
	평균환율	1,100.58	1,166.11	6%	1,180.01	1%	1,144.61	△3%

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생산자 경영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출처: 이해관계인회의 발언요지)

### <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가격 >

(단위: USD, USD/KG, 천원/KG, %)

7 H	11011	'19년		*20년		'21'	đ
구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조사대상물품수입가 격(CIF)	3.96	3.28	△17%	2.56	△22%	3.31	29%
조사대상물품 재판매가격	1,000	870	△13%	686	△21%	861	26%
국내생산품 평균판매가격	1,000	851	△15%	723	△15%	804	11%

자료: 관세청무역통계, 국내생산자 내부자료

#### 나. 원재료 가격동향

(단위 : 톤, 천원, %)

구분		11014	19	d	120	년	'21년	
		'18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량	1,000	887	△11%	879	△1%	889	1%
폴리아미드 (NYLON) RESIN	금액	10,000	7,348	△27%	5,716	△22%	8,472	48%
	단가	1,000	828	△17%	650	△22%	953	47%

(출처: 국내생산자 답변서)

8.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계속 구입할 것인지 여부와 동 제품을 계속 구입할 수 있는 최고 가격수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계속 구입. 국산보다 10% 가격이 높아도 구입 의향있음

(출처: 국내수요자 답변서\_수요1사)

10.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수요, 공급(생산, 수입)과 관련한 경기변동 요인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s)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중국 제품의 품질 유지과 가격 경쟁력으로 기존 해외 수출업체에 수출 단가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코로나 재확산, 자국/타국 수요 상승 등의 원인으로 현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국내가격과도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국산 물품의 품질을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품질 수준을 숫자로 나타내 주십시오.

국산 (100) 중국 (200) 태국 ( ) 인도네시아 ( ) 기타 ( )

(출처: 국내수요자 답변서\_수요2사)

2.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은 유사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수입산은 두께 평활도가 좋으며, 컬방지 효과가 국산품 대비 우수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컬방지 효과란 <u>포장재사용시, 적층시 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컬이라고 하는데, 컬이 발생하면 포장 가공시 불량발생 가능성</u>이있습니다. 이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신청인은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품질이 유사하여, 국내생산품도 컬방지 기능을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청인은 또한 축차연신방식이더라도 생산된 제품의 중앙(Center)부분에서 생산된 제품과 튜불러(Tubuler)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에서도 그 기능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품생산의 특정 위치에서

만 대체가능한 것으로 중앙부분에서 생산된 제품만으로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국내생산품은 품질면에서 수입제품과 100% 대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사의 품질만족을 100%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산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 3. "조사대상물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신청 인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은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품물품 간의 품질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수요자들의 답변서에 따르면 1) 중국산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 2) 품질 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구매요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입자들은 '<u>수입산제품의 가격이 국내산제품보다 (약 10%)비싸더라도 일정부</u>분 감내하고 수입을 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입산제품의 가격이 국내산제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입산제품이 덤핑된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산제품의 원가가 높아서 적정판매가격보다 높은 판매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원가경쟁력이 낮은 것을 덤핑규제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모 면하고자 하는 것이지, 수입산 제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품질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바, 소비자 평가

컬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중국산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고객사 많음

사. 수입 이유(예: 가격이 낮아서, 국내 동종물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동등 유사한 물품이 없어서 등)

BOPA는 생산방식이 동시연신과 축차연신이 있는데 동시연신이 컬방지 효과가 우수. 지금 동시연신방식은 국내에 효성 대전공장이 유일해서 전국 각지 연포장 업체들이 줄서서 받는 실정.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아 완제품에 컬(CURL, 포장재 구부러짐)이 발생하면 반품발생(자동포장기를 적용하는 큰 고객사는 포장재가 구부러지면 기계에서 봉투를 한 장씩 집어가지 못해서 반품)

8.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계속 구입할 것인지 여부와 동 제품을 계속 구입할 수 있는 최고 가격수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계속 구입. 국산보다 10% 가격이 높아도 구입 의향있음

11. 국산 물품의 품질을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품질 수준을 숫자로 나타내 주십시오.

국산 (100) 중국 (200) 태국 ( ) 인도네시아 ( ) 기타 ( )

(출처: 국내수요자 답변서\_수요1사)

5. 수입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 품질, 작업적합성 등의 구매결정요인 중 우선 적 고려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품질(작업적합성) 이 첫 번째 구매요인이며, 두 번째는 가격, 세 번째는 큰 금액의 거래가 오가기 때문에 수입사와의 신뢰성을 고려합니다.

6. 국산 또는 조사대상국(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체 가능한 제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가격 변동 여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도 혹은 베트남에서의 BOPA 필름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보이나, 품질이 좋지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수요, 공급(생산, 수입)과 관련한 경기변동 요인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s)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중국 제품의 품질 유지과 가격 경쟁력으로 기존 해외 수출업체에 수출 단가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코로나 재확산, 자국/타국 수요 상승 등의 원인으로 현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국내가격과도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국내수요자 답변서\_수요2사)

7. 기타의 요인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BOPA Film)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국제원자 재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구체적 사례 제시)

국제 원재재 가격 인상, 중국 명절 관련하여 수요 증가, 해상운임 증가로 수입가 격 인상 및 물량 확보가 힘듬.

(출처: 국내수요자 답변서\_크라운화학)

#### 4. "국내시장의 공급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은 수입품의 감소 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국내생산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단순히 국내 수요량과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각 사의 생산량에서 판매되는 수출량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국내생산품으로 미국, 중국 수출판매 확대 계획 중에 있으며, 생산 Capa 대비 국내수요 부족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의 경우에도 조사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향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공급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국내산 납기 대응이 늦고, 보유 제고가 많지 않은 이유로 단기적으로 인니산 수입량을 300톤까지 늘렸다고 들었음))

(최근 JK 머티리얼즈의 수출량 감소는 해상운임 증가로 인한 수출 수익성 악화로 수출을 중단하고 내수판매에 집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효성화학은 수출수량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신청인의 의도대로 반덤핑관세 부과로 중국산 수입이 제한되고, 국내생산한 제품을 국내생산품을 수출하지 않고, 모두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경우, 국내시장은 더욱 독과점화 될 것이며, 전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실수요자 및 최종소비자의 소비자후생 및 국내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서는 수입산이 일정부분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국내시장구조입니다 오히려 중국산 수입이 제한되면, 수많은 수요자들은 품질이 낮으며 가격이 비싼 제품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시장이 공정한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함입니** 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을 토대로 하면, 신청인은 품질, 원가경쟁력, 제품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수입산에게 밀리기 때문에 덤핑규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의 실수요자 및 최종소비자의 소비자후생 및 국내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수입산이 일정부분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5.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격차이"에 대해서

신청인은 조사대상국가의 수입품이 국내생산품의 가격보다 낮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는 산업피해률에 대한 문제이지, 덤핑사실에 대한 이슈는 아닙니다. 설사 품질이 더 우수한 조사대상국가의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보다 같거나 낮다고 하다면, 이는 원가경쟁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며, 자사의 원가경쟁력, 제품경쟁력의 부족을 덤핑 수입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효성화학의 중국 생산법인, 효성자성의 덤핑률은 미미한 수준이며, 덤핑관세를 부과할 경우, 효성화학은 수입자로서 불필요한 관세부담만 발생할 뿐더러, 이를 판매가격에 전가할 경우, 국내제품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다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6. "생산자 답변서"에 대해서

신청인은 효성화학이 생산자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생산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사개시 전부터 국내생산자로서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생산자인 당사의 경영지표를 같이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생산자 질문서를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효성화학은 무역조사실의 조사 업무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하고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무역조사실의 질문서 발송 또는 국내 생산자로서의 경영지표 자료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자발적으로 국내 최대생산자의 경영지표를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개용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생산자 답변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사항이 며, 효성화학은 무역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국내생산자 의견서

효성화학(주)의 이해관계인회의(2022. 5. 18)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에 대하여

2022. 6. 2

제이케이머티리얼즈㈜(이하 "국내생산자")는 효성화학㈜(이하 "효성")가 이해관계인회의(2022. 5. 18)와 관련하여 제출한 추가발언에 대한 서면 제출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u>효성화학은 국내생산품의 가격과 유통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u>니다.

국내생산자는 본 조사의 신청서 및 국내생산자 답변서를 통하여 국내생산품의 국내판 매가격과 재판매가격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의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생산자는 조사대상물품이 여러 국가 및 수출자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국가별 재판 매가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면 회의가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회의자료에서는 수입가격과 국내생산품의 가격을 비교하였습니다.

재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국내생산품의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보다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u>효성화학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했다고</u> 주장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미드 필름의 원재료는 폴리아미드 레진(Chip)으로서 카프로락탐(폴리아미드의 원재료)의 국제시세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조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원재료 가격은 모두 동일한 가격시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원재료 가격이 동일한 시세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은 가격도 비슷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기간 내내 조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조사대상물품의 가격차이는 매년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사대상물품이 국내생산품의 가격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의 가격비교〉

(단위: 원/KG, %)

	구분		<b>'19</b>	년	'20	년	'2	1 년
				증감률		중감률		중감률
	중국	1,000	858	△14%	676	△21%	860	27%
재판매가격	태국	1,000	625	△38%	603	△3%	728	21%
(원/KG)	인도네시아	1,000	974	△3%	778	△20%	912	17%
	조사대상물품 평균	1,000	870	△13%	686	△21%	861	26%
국내생산	품 평균판매가격(원)	5,067	1,000	851	△15%	723	△15%	804
	중국	1,000	789	△21%	1,144	45%	294	△74%
가격차이	태국	1,000	5,228	423%	3,036	△42%	2,274	△25%
(원/KG)	인도네시아	1,000	276	△72%	463	68%	295	△36%
	조사대상물품 평균	1,000	701	△30%	1,013	44%	350	△65%

3. 수요1사는 중국의 동시연신제품이 컬방지효과가 높다는 이유로 국내생산품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가격이 비싸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 성 또한 국내생산품의 품질이 낮아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입1사는 동시연신제품이 컬방지효과가 우수하여 비싼가격에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동시연신제품은 축차연신제품에 비해 높은 높은 가격 보이기 때문에 수요1사가 동시연신제품을 선호한다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아래의 태국의 판매가격 견적서를 보면, 동시연신제품의 가격은 [BHT \*\*\*\*\*/KG]으로 축차연신제품은 [BHT \*\*\*\*\*/KG]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태국제조자의 견젹서>

비공개 정보

수입1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축차연신제품보다 비싸야 할 동시연신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받고 있으니 수입품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보다 10% 정도 높아도 수입품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은 국내생산품보다 10%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품질, 높은 가격의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실 제로 국내산업피해는 국내생산자가 제출한 산업피해지표 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생산자가 컬의 의미, 발생원인, 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서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컬은 특정 가공업체 또는 최종수요자의 사업과 설비의 구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며, 국내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수요자 등에서 발생하는 품질이슈이며, 이마저도 최근 국내생산품을 사용하는 가공업체에서도 점착기술의 발달, 다른 원자재의 품질 향상 등으로 문제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입자가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한다면 효성에서만 구매가능한 제품이 아닙니다. 동시연신 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자 한다면 효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도 충분 히 구매가능하여, 수입품을 고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효성의 중국산 물품도 국내생산품과 동일하게 축차연신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컬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생산품과 동일한 입장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성은 자사의수입품과 관련 없는 동시연신제품의 필요성을 이유로 수입의 필요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성이 하나의 수입자로서의 입장이 아닌 최대수입자로서 수입자의 대표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u>효성은 국내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국</u> <u>내생산자가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 품질이 안좋다고 주장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u> 국내판매가격이 적정판매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매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 하락되어야 정상적인 시장상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생산자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가격이 더 낮아진다는 것은 국내생산자로 하여금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효성이 수입하지 않는 국내생산자라면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는 효성이 국내산업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 회의에서 국내생산자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이 더 높아야 정 상적인 시장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효성은 이러한 국내생산자 주장을 원 인과 결과 바꿔 수입품의 가격이 낮으니 품질이 낮다고 주장했다라는 자의적인 해석 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성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만든 의미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5. 국내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국내생산자의 주장에 대하여 효성은 수출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수입이 제한되어 국내생산품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경우 독점화 될 것이며, 전방산업의 실수요자 및 최종소비자의 소비자 후생 및 국내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는 수입품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은 품질, 원가경쟁력, 제품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자는 수출량 뿐만 아니라 수입량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효성이 의견서를 통하여 "효성화학은 국내생산품을 미국, 중국 수출판매 확대 계획 중이며, 생산 CAPA 대비 국내수요 부족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효성은 중국에서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을 저가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 발생한 국내생산품의 생산여력을 수출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산업의 피폐화를 감수하더라도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저가 수입을 하고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효성은 국내시장에 수입품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전방산업을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즉 효성은 국내 폴리아미드 필름 산업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방산업의 안정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효성은 국내산업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효성이 국내산업의 공정성 회복, 안정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효성은 자신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하여 덤핑률이 미미하고, 덤핑방지관세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폄하하는 등의 이기적인 주장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자는 조사 중인 덤핑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덤핑률의 정도를 떠나서 국내시장에서 조사대상물품은 저가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은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생산자는 국내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나아가 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회의에서 국내생산자가 주장한 바와 같이 덤핑방지관세는 저가의 수입가격을 보완하여 국내시장의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이지, 수입을 막는 조치가 아닙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 유통가격이 정상화 될 것이지 수입이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당사를 포함하여 효성, 코오롱인더스트리(즈)의 3개 회사가 국내생산품을 생산①판매하며 경쟁하고 있으며, 기타국에서도 일부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시장에는 여러 시장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독과점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6. <u>효성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불필요한 관세부담만 발생시키고, 국내제품가격</u> 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앞서 효성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면서도 덤핑방지관세는 불필요한 관세부담을 발생시킨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인해 국내가격이 상승한다고 주장을한 것은 덤핑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통하여저가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가격 상승은 현재 국내산업이 산업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덤핑방지관세의부과가 불필요한 행위가 아닌 국내산업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을 뜻합니다.

7. <u>생산자 답변서 관련하여 효성은 자신이 국내최대생산자로서 경영지표를 제출할</u>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22. 3. 9의 조사개시결정 보고서에서 효성은 관계사로부터 수입하였고, 수입량이 상당한 비중에 해당하여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에서는 국내산업을 조사함에 있어 효성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개시가 결정된 이후에도 효성은 자신이 최대국내생산자라고 자인하며, 무역위원회조사실의 요청이 있으면 경영지표를 제출하겠다라는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조사대상물품의 최대 수입자로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조사대상물품일 것입니다. 또한 앞서 효성은 중국산 물품을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수출여력이 증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조사대상물품을 수입을 통해 국내 판매량을 조정하고 나아가 국내생산품의 생산계획, 내수 및 수출판매계획과 수입품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통한 여유자금을 통한 투자계획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효성의 국내사업은 중국산업과유기적으로 동조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효성은 한국내의생산능력 보다 중국의 생산능력이 더 크고, 최근 중국에 추가 증설하여 중국의 생산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효성의 폴리아미드 사업은 국내산업이라기 보다는 중국산업에 귀속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산업적의 위치에 있는 효성에게 무역위원회에서 국내산업지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산업에 가까운 효성에게 국내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효성이 국내산업과 관련한 경영지표는 수입품으로 인한 양적, 질적 효과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았을 것이므로, 국내산업지표로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모든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 조사 관련 신청인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22년 5월 25일에 효성화학㈜의 중국 증설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당사의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며,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신청인은 "효성화학은 장기간 국내생산품과 조사대상물품을 동시에 판매에 따른 높은 시장점유율, <u>국내의 대표 소재기업이라는 기업 브랜드 등의</u> <u>국내사업기반으로 인해</u>,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보다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효성화학이 국내 대표 소재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신규 투자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할 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부 국내상산자조차 <u>저가수입품</u>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효성화학이 수입하여 재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신청인의 판매가격 대비 저가가 아니며 저가 판매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규 투자 마저도 <u>국내가 아닌 피조사국에 이뤄져 국내산업의 발전이 아닌 위험으로</u>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술하는 것처럼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Global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질개선과 더불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증설이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증설 계획 또는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고민 하지 않고, 오히려 덤핑방지관세와 같은 수입규제에만 의존하여 국내시장의 Market Share만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의 변화 및 중국내의 증설 투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 회의 발언요지에도 제출된 것처럼 폴리아미드 필름의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용도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폴리아미드 필름 시장의 수요는 향후 5년간(2021~2026) 연 평균 6.8%

성장, 공급자의 공급능력은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아래와 같은 배경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2020~2024년 연평균 11%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대부분의 증설은 중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1) 2015년 10월 식품안전법 시행 강화와 2019년 9월 방부제 등 식품용 첨가제 사용기준 강화
- (2) 법령 규제로 유통기한의 연장이 필요하여 산소투과도가 낮은 나일론 사용 증가
- (3)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냉동식품, 반제품 요리 등 즉석 조리식품의 다양화 및 판매 증가
- (4)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이동시 내충격성 수요 증가
- (5) 인구 노령화에 따른 제약용(CAGR 6.5%, 출처 Technavio) 및 셀파우치용등 비식품용 증가

중국의 경쟁자들도 증설을 추진중이며, 현재 중국내 공급 능력을 감안할 때, 2024년까지 추가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에만 장화 (축차 2라인), 윈청 (동시 1라인, 축차 1라인), 기타 신규 공급자 3개사 (각 동시 1라인) 등 총 5개사가 무려 7개 라인을 증설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황을 고려 시 이미 중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중국 생산자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증설을 계획한 것입니다.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와 품질이 보증된 차별화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Global Top Tier 생산자로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용도의 필름을 제공하고자 생산 공법 차이가 있는 설비 2라인에 투자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중국 내 판매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비공개 정보는 회사의 영업전략 및 제품정보에 대한 사항으로 <관세 법 시행규칙 제 15조> 의 기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 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비공개로 처리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중국내 신규투자법인에서 생산하는 폴리아미드 제품은 대부분 중국내수시장에 판매될 수밖에 없으며, 국내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설비에서 생산된 범용 제품은 중국내수 시장에, 차별화 제품은 유럽, 미주, 일본 등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의 신설법인 투자가 한국내 생산자인 신청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의 산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의 막연한 우려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의 수단 일 뿐이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품의 경쟁력,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나날이 치열해지는 Global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업활동의 발목 잡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에 대한 의견

2022 7 1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간 플라아미드 필름 반담평조사 (이하 "본건") 관련 과신 청인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상") 및 수입자이면서 국 내생산자인 주식회사 효성화학(이하 "효성화학")은 무역조사실의 예비판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계출합니다.

국내 플리아미드 원름 시장은 효성화학(()(최선정인 효성자성의 관계회사)의 국내시장 점 유율이 가장 큰 가운데,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및 제이케이머리리얼즈(주)(신청안)로 이루어 전 국내 생산자 3사의 중국 등 수입산의 공급으로 수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참정덤평방지 관세가 부과 된다면 급착스러운 국내 시장의 동가 상승과 수임산 의 공급 감소로 수급 균형이 깨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직접 적인 의해를 국내수요자가 받게 됩니다.

조사대상등품 플리아미드 필름의 국내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능력은 제한 적인 상황이며, 특히 조사대상등품인 두제 25 pm이하 플리아미드 필름의 경우, 코 로나-19 가 확산된 이후 사용량이 증가하여 국내산으로는 수요를 충축시킬 수 없 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플리아미드 필름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현재에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 해서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플리아미드 필름의 주요한 용도인 포장식품용은 국민식생활과 소비자 물가에 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플리아미드 필름으로 포장용지를 생산 공급하는 국내 포장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임을 감안하면, 감작스러운 참정조치는 포장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예측하지 못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원가 상승을 최종 소비재에 전가한다면, 상당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귀절된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포장재 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국내공급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참정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외로 수출되는 플리아미드 월름이 국내 공급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확대를 거해하여, 경상수지 악화로 연절될 것입니다.

산업피해 지표를 검토하더라도, 산청인의 내수 판매실적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조사대상 물품 수입의 절대적 증가 및 상대적 증가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산업의 대 표성 문제 및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국내최대생산자인 효 성화학 및 다른 수입자, 수요자들의 의견이 전례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며, 본 조사 및 공청회를 통하여 검토될 사항업을 상기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수입자 답면서에서도 답면한 바와 같아. 실제 중국산 플리아미드 필름의 유 통가격은 국내신청인인 IK Material 의 관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임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정조치를 할 경우, 해당 범평방지관세 만큼 유통가격이 상승된 것은 자병합니다.

요약하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불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 장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조사대상물품에 담평방지관내가 부과 된다면, 소비가 불가 와 최절되어 국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공공의 이익관성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귀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국내산업 피해에 대하여 긍정 판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참정관세부과 결정에 있어서 미부과 결정을 해 추실 것을 귀 위원회 조사실 및 모든 부역위원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무 역 조 사 실

무역조사실장 신 동 준

# 조 사 단

#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한 상 덕

조 사 관 산업피해조사과 김 준 철

#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이 원 희

조 사 관 덤핑조사과 한 정 선